

# 수 산 동 물 질 병 관 리 법 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제2조(정의)</p> <p>제3조(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 제4조(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p> <p>제5조(기술개발계획 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p> <p>제2장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제7조(수산동물방역관)</p>	<p>제1조(목적) 제2조(수산동물의 범위)</p> <p>제3조(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제4조(수산동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제5조(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p>	<p>제1조(목적) 제2조(수산동물전염병) 제3조(병성감정 및 역학조사대상의 수산동물전염병) 제4조(수산동물집합시설) 제5조(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 제6조(방역협의회의 기능) 제7조(방역협의회의 구성) 제8조(방역협의회의 회의) 제9조(방역협의회의 운영)</p> <p>제10조(수산동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제11조(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 및</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8조(수산동물방역사)</p> <p>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p> <p>제10조(병성감정 등)</p> <p>제11조(역학조사)</p> <p>제12조(병원체분리의 신고 및 보존·관리)</p> <p>제13조(수산동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p> <p>제14조(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등)</p> <p>제15조(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등)</p> <p>제16조(살처분명령)</p> <p>제17조(사체의 처분제한 등)</p> <p>제18조(오염물건의 소각 등)</p>	<p>입기 및 경력기준)</p> <p>제6조(수산동물방역기관)</p> <p>제7조(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p> <p>제8조(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p> <p>제9조(양식제한조치)</p> <p>제10조(수산동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p> <p>제11조(사체의 재활용)</p>	<p>시료채취)</p> <p>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p> <p>제13조(수산동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p> <p>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p> <p>제15조(역학조사)</p> <p>제16조(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p> <p>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p> <p>제18조(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등의 절차)</p> <p>제19조(살처분명령)</p> <p>제20조(수산동물 사체 등의 소독·소각 또는 매몰)</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19조(발굴의 금지)</p> <p>제20조(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p> <p>제21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p> <p>제3장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p> <p>제22조(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p> <p>제23조(지정검역물)</p> <p>제24조(수입금지)</p> <p>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p> <p>제2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p> <p>제27조(수입검역)</p> <p>제28조(파견검역)</p>	<p>제12조(수산동물검역기관)</p> <p>제13조(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p> <p>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p>	<p>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p> <p>제22조(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p> <p>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p> <p>제24조(수산동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p> <p>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p> <p>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p> <p>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이행기간)</p> <p>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p> <p>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p> <p>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p> <p>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p> <p>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제30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31조(수출검역 등)                      제32조(검역시행장)</p> <p>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5조(재검역)                      제36조(검역판정의 취소)                      제37조(수입위험분석)</p> <p>제4장 보 칙</p> <p>제38조(방역교육)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p> <p>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                      제41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p>	<p>면제)</p> <p>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p>	<p>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p> <p>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제35조(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신청 등)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p> <p>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p> <p>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의 실시)                      제40조(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보상금 등)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제44조(보고) 제45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개정2008.2.29>) 제46조(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의 방 역조치요구) 제47조(수산동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8조(명예감시원) 제49조(사법경찰권) 제50조(수수료) 제51조(청문)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7조(방역비용의 지원) 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제42조(수산동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56조(양벌규정) 제57조(과태료)</p> <p>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8조(통칙) 제59조(통고처분) 제60조(범칙금의 납부) 제61조(통고처분의 효과)</p> <p>부칙 &lt;제8789호,2007.12.21&gt; 제1조~제5조 &lt;생략&gt;</p> <p>부칙(정부조직법) &lt;제8852호,2008.2.29&gt; 제1조~제7조 &lt;생략&gt;</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p> <p>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p> <p>부칙 &lt;제21174호, 2008.12.22&gt; 제1조(시행일)</p>	<p>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p> <p>부칙 &lt;제45호, 2008.12.22&gt; 제1조~제2조 &lt;생략&gt;</p> <p>부칙 &lt;제60호, 2009.2.24&gt; 시행일 &lt;생략&gt; 부칙 &lt;제66호, 2009.4.17&gt; 시행일 &lt;생략&gt; 부칙 &lt;제87호, 2009.10.21&gt; 시행일 &lt;생략&gt;</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정 2007.12.21] [법률 8789호] [시행 2008.12.22] [법률 제8852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8.2.29&gt; 1. "수산동물"이란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정 2008.12.22] [대통령령 제21174호] [시행 2008.12.22] [대통령령 제21774호]</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수산동물의 범위)</b>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제정 2008.12.2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5호] [시행 2009.10.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7호] [개정 2010. 4.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개정 2009.10.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수산동물전염병)</b>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2. "수산동물질병"이란 수산동물의 체내에 병원체가 침입한 상태를 말한다.</p> <p>3.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퀘양증후군, 전염성채장괴사증,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4. "병성감정(병성감정)"이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p>	<p>1. 연체동물(연체동물) 중 두족류</p> <p>2. 극피동물(극피동물) 중 성게류, 해삼류</p> <p>3. 척색동물(척색동물) 중 미색류 (미색류)</p> <p>4. 갯지렁이류 · 개불류 · 양서류 · 자라류 · 고래류</p>	<p>1.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 (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p> <p>2.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즈스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폐사증</p> <p>3.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구상바쿨로바이러스증, 사면바쿨로바이러스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p> <p>4.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p> <p>5. "역학조사"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p> <p>가. 전염병의 발생규모 파악</p> <p>나. 전염병의 감염원 추적</p> <p>다.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을 위한 활동</p> <p>6. "수산동물양식시설"이란 수산동물의 양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장에</p>		<p>제3조(병성감정 및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 ①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을 말한다.</p> <p>②법 제2조제5호 및 법 제11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전염병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채장괴사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li> <li>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전염병</li> </ol>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설치된 수조 (수조, 유수식 수조를 포함한다)·배관·저수지, 그 밖의 양식용 구조물을 말한다.</p> <p>7. "수산물집합시설"이란 활어공판장·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동물의 매매·교환 등을 위하여 수산동물이 취합·교류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8. "검역시행장"이란 수출입되는 수산동물 중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수출검역시행장과 수입검역시행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을 말한다.</p> <p>9. "수산물관련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p>		<p>제4조(수산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활어위판장·활어공판장</li> <li>2. 수산물도매시장</li> <li>3. 수산동물을 보관·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li> <li>4. 수산물식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동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b>제3조(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관리대책(이하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b>제5조(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b>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업무를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예찰(예찰)을 할 수 있다.</p> <p>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른 예찰을 할 때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산동물관련단체, 수산동물관련 기업의 대표 및 수산동물전염병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1.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p> <p>2. 수산동물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p> <p>3.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p> <p>4.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p> <p>5.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p> <p>6.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p> <p>7. 그 밖에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시책에 관한 사항</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③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4조(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b></p> <p>①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08.2.29&gt;</p> <p>②방역협의회에는 수산동물의 양식 또는 수산동물질병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③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b>제6조(방역협의회의 기능)</b>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대책 및 방역제도의 개선</li> <li>2.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대책 및 검역제도의 개선</li> <li>3. 수산동물질병의 방역 및 검역에 관한 분쟁조정</li> <li>4. 그 밖에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및 검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역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li> </ol> <p><b>제7조(방역협의회의 구성)</b> ①방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 1명으로 한다.</p> <p>③위원장은 방역협의회를 대표하고, 방역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된 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p> <p>⑤방역협회의 위원은 수산동물의 양식 또는 수산동물질병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b>제8조(방역협의회의 회의)</b> ①위원장은 방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③방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방역협의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b>제9조(방역협의회의 운영)</b> ①방역협의회의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5조(기술개발계획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기술</p>	<p>제3조(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p>	<p>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p> <p>②방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종합계획(이하 “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동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li> <li>2.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li> <li>3.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li> <li>4.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li> <li>5.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li> <li>6.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li> <li>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의약품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수산동물양식시설의 소유자·관리자·운영자(이하 "수산동물양식자"라 한다) 및 그 종사자는 수산동물의 양식장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동물전염병과 관련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 연구기관 및 수산동물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b></p> <p><b>제7조(수산동물방역관)</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을 둔다. &lt;개정 2008.2.29&gt;</p> <p>②수산동물방역관은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도</p>	<p><b>제4조(수산동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b></p> <p>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수산동물방역 수행기관을 말한다.</p> <p>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③수산동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p>	<p><b>제10조(수산동물방역관에 대한 교육)</b>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b>제11조(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b>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동물방역관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동물방역관의 업무 담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경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④수산동물방역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수산동물집합시설 등 수산동물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 수산동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수산동물질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p>	<p>제5조(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①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p> <p>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 방역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li> <li>2.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 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li> <li>3.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li> </ol>	<p>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①법 제7조제4항·제8조제2항·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수산동물방역사·수산동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무상)으로 채취·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수거한 시료나 물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⑤수산동물방역관이 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8조(수산동물방역사)</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수산동물방역사로 위촉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수산동물방역사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7조제4항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생물질병학·수산생물학·양식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자</p>	<p><b>제13조(수산동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b>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li> <li>2.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③ 제7조제5항은 수산동물방역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 중 "수산동물방역관"을 "수산동물방역사"로 본다.</p> <p>④ 수산동물방역사의 자격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 수산동물방역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 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사가 수산동물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수산동물집합시설 등에의 출입</li> <li>2.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의 유무 확인</li> <li>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시료의 채취</li> </ol>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동물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b></p>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수산동물양식자와 그 수산동물을 진단하였거나 그 수산동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의사 및 해당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동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조사활동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수산동물양식자가 수산질병관리사, 의사 또는 제10조제4항의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에 그 수산동물의</p>		<p><b>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b></p> <p>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구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 대상 수산동물의 양식자 성명, 양식 장소 및 발견 장소</li> <li>2. 신고 대상 수산동물의 종류 및 수량</li> <li>3. 질병명(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li> <li>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 연월일)</li> <li>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li> <li>6. 그 밖에 수산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한 사항</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경우 및 해당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가 그 의뢰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li> <li>2.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li> </ol> <p>②차량·선박·철도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운송하는 자(이하 "수산동물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수산동물이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산동물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이나 수산동물 관련 연구기관이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동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li>2.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동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li>3. 수출입 수산동물이 검역 중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는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수산동물양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0조(병성감정 등) ①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동물</p>	<p>제6조(수산동물방역기관)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동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에게 그 수산동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병성감정을 의뢰받은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의뢰받은 수산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인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lt;개정 2008.2.29&gt;</p> <p>③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동물양식자의 신청이 있거나 수산동물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p>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수산물전염병의 병원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을 수산물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업무정지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li> <li>3.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린 수산동물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li> <li>4. 제6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5.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li> </ol> <p>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과 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08.2.29&gt;</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11조(역학조사)</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08.2.29&gt;</p> <p>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b>제15조(역학조사)</b> ①국립수산과학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동물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동물의 발견일시·장소·종류·수량·양식 환경 및 분포 등 일반 현황</li> <li>2.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li> <li>3. 수산동물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li> <li>4. 그 밖에 해당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②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li> <li>2. 법 제8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사</li> <li>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1년 이상 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li> <li>4.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li> </ol> <p>③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12조(병원체분리의 신고 및 보존·관리) ①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 또는</p>		<p>2.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p> <p>3. 수산동물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p> <p>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p> <p>④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p> <p>⑤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동물 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08.2.29&gt;</p> <p><b>제13조(수산동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p>	<p><b>제7조(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b>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자(이하 “수산동물양식자”라 한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운송업자(이하 “수산동물운송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p>	<p><b>제16조(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b> ①국립수산과학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거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수산생물용 의약품(이하 "수산동물용의약품"이라 한다)의 투약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투약명령을 한 경우로서 수산동물양식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갖추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의 차단, 입식(입식)의 제한 또는 소독을 면제한다.</p>	<p>1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지역</li> <li>3. 대상 수산동물양식시설의 종류와 수산동물전염병의 종류</li> <li>4. 기간</li> <li>5. 그 밖에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관한 사항</li> </ol> <p>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와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1.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p> <p>2.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p> <p>③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투약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④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투약을 할 때 필요한 비용 및 약품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병성감정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14조(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수산동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하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 대상 수산동물의 종류,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자 또는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동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동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p>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③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물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물양식자 및 수산물운송업자에게 수산동물을 이동함에 있어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증명서를 갖추고 이동하는 수산동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등을 면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④제3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의 휴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b>제15조(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등)</b></p> <p>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량</p>	<p><b>제8조(수산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b></p> <p>①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산물양식시설의 폐쇄기간은 6개월로 한다.</p>	<p>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물명과 수산물전염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 밖에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의 휴대에 관한 사항</p> <p><b>제18조(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등의 절차)</b>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폐사를 일으키는 수산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산동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하여 교통의 차단, 해당 수산동물에 대한 입식(입식)의 제한 또는 소독을 할 수 있다.</p>	<p>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폐쇄명령일자 등을 관할 시·도지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산물양식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④법 제15조제4항제1호의 게시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입식(입식)제한 또는 소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지역</li> <li>3. 대상 수산동물 또는 운송수단</li> <li>4. 기간</li> <li>5. 그 밖에 교통차단·입식제한 또는 소독에 필요한 사항</li> </ol>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입식제한 또는 소독 등 수산물방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물방역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방역업무에 필요한</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수산동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수산동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수산동물양식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그 수산동물양식시설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양식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li> <li>2. 그 수산동물양식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시설의 명칭</li> <li>2. 폐쇄기간</li> <li>3. 폐쇄 사유</li> </ol> <p>⑤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봉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쇄기간</li> <li>2. 해당 시설의 출입금지를 명하는 내용</li> </ol> <p><b>제9조(양식제한조치)</b>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식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에 감축할 수산동물(이하 “감축대상수산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p> <p>②감축대상수산동물의 수량은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동물의</p>	<p>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수산동물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⑥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수산동물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까지 감축</li> <li>2.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양식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수산동물 중 제1호에 따라 감축된 수산동물 외의 감축대상수산동물 감축</li> </ol> <p>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10조(수산동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p> <p>①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동물 운송업자에게 명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 양식시설에서 양식된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 4개월 이내</li><li>2.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 양식시설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양식된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li></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 2개월 이내</p> <p>②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정지기간을 가산(가산)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할 때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으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16조(살처분명령)</b>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의 수산물양식자에게 그 수산동물의 살처분(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수산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b>제19조(살처분명령)</b>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물전염병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잉어봄바이러스병</li> <li>2. 그 밖에 수산물양식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살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전염병</li> </ol> <p>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p> <p>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동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④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수</p>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1. 수산물양식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p> <p>2. 수산물양식자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p> <p>3. 그 밖에 수산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제17조(사체의 처분제한 등) ①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의 수산물양식자는 수산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수산동물의 사체를 이동·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질병관</p>	<p>제11조(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p>	<p>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p> <p>⑤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수산물양식자의 질병·여행 등으로 인하여 살처분명령에서 정한 날까지 살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p> <p>2. 2개 이상의 수산물양식시설에서 동시에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p> <p>제20조(수산동물 사체 등의 소독·소각 또는 매몰)</p> <p>①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사체나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리사·수의사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안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수산동물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 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을 살처분한 수산동물양식자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을 살처분한 수산동물방역관은 그 수산동물을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산동물에 대한 병 성감정이나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 목 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2.29&gt;</p>	<p>하는 고기·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동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 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 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p>	<p>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매몰 지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독·소각 또는 매몰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③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을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④제2항에 따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수산동물은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p> <p><b>제18조(오염물건의 소각 등)</b> ①수산동물방역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 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소각 또는 매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수산동물양식자</li><li>2. 수산동물집합시설의 관리자</li><li>3. 수산동물운송업자</li><li>4. 활어수조 등 수산동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li></ol> <p>②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시설 또는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p> <p>③수산동물방역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자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스스로 소독·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19조(발굴의 금지)</b> ①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18조에 따른 수산동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b>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b>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동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수산동물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동물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동물방역관이 참석한 가운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하여야 한다.</p> <p>②법 제19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몰된 수산동물의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수산동물전염병 명칭</li> <li>2. 매몰된 수산동물 또는 물건의 종류</li> </ol>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20조(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 ①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종묘(종묘) 또는 치어(치어)로서 방류되는 수산동물(이하 "방류수산동물"이라 한다)을 방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방류수산동물에 대한 수산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동물이 수산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류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lt;개정</p>		<p>3.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4.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p> <p>제22조(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면 품종: 전복, 넙치, 감성돔, 자주복, 해삼, 참가리비, 조피볼락, 황복과 그 밖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li> <li>2. 내수면 품종: 참계,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꺾지, 뱀장어, 자라와 그 밖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li> </ol> <p>②방류수산동물의 수산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2008.2.29&gt;            ③제1항에 따른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동물의 종류와 검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방류수산동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 전염병에 감염된 방류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④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수산동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p> <p>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독·격리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21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양식시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단위로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수산동물질병의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이하 "질병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b> ①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은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하여야 한다.</p> <p>③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시·도지사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동물관련단체로부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동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b></p> <p><b>제22조(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①</b>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수산동물검역관을 둔다.</p> <p>②수산동물검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동물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b>제12조(수산동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b>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p> <p><b>제13조(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①</b>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자로서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p>	<p><b>제24조(수산동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①</b>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②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③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자로서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경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수산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자동차·열차·보세구역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⑤수산동물검역관은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동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li> <li>2.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li> <li>3. 어병(어병)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산생물 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li> </ol>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⑥수산물검역관이 제5항에 따라 검사 또는 수거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23조(지정검역물)</b>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살아있는 수산물로서 이식용(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인 것</li> <li>2. 제1호의 수산물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산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료·기구·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li> </ol>		<p><b>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b>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식용 수산물[정액(정액)또는 란(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li> <li>2.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물 중 어류·패류·갑각류</li> <li>3. 수산물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진단액류)가 들어 있는 물건</li> </ol>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24조(수입금지)</b>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2.29&gt;</p> <p>1.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한 경우를 제외한다)</p> <p>2. 수산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물</p> <p>②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하는 때에는 수입방법과</p>		<p><b>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b>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 검역물별로 고시하여야 한다.</p> <p>②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에 수산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나 항공기·선박의 전용 구역에 원상(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p> <p>③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동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③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지정검역물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p> <p>④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li> <li>2. 전문인력 확보 현황</li> <li>3. 안전관리계획서</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⑤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시험용·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여부</li> <li>2. 수입금지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li> <li>3.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의 적정성</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수산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4. 해당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관리 방법의 적정성 5. 해당 수입금지물건의 유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p> <p>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동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자가 소비용은 제외한다)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폐기·소각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p>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수산물검역관은 미리 농림수산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1.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p> <p>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p> <p>3.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수산물전염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산물검역관이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③수산동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을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p> <p>④수산동물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p> <p>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은 수산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한다.</p> <p><b>제2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b>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p>		<p><b>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b>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09.2.24&gt;</p> <p>1. 수산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2.29&gt;</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li> </ul> </li> <li>3. 수산동물 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li> <li>4.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이식용 수산동물은 제외한다)</li> <li>5.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동물 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li> <li>6. 양식[축양(축양)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인 경우</li> <li>7.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경우</li> <li>8. 이식용 수산동물이 아닌 지정검역물인 경우</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27조(수입검역)</b>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지체 없이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p>		<p>9. 별표3의2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②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검역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lt;개정 2009.2.24&gt;                  ③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는 수출국의 검역내용·위생상황 등 위생조건 준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b>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b>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수산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p> <p>③수산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p>		<p>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支院)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li> <li>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제1항 단서</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 물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p>		<p>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3.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p> <p>4. 제32조제4항에 따른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한다)</p> <p>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역 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p> <p>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항·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는 별표 4에 따른다.</p> <p>④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증</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p> <p><b>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b>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식용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휴대한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수산동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을 첨부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출입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출입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수산동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28조(파견검역)</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수산동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li> <li>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동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동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li> </ol> <p>②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한다.</p>	<p><b>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b>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동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의 임상검사(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p>	<p><b>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b>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검역 신청서에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견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li> <li>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li> <li>수산동물검역관이 수출국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③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의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p> <p>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제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p> <p>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파견검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p>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①지정검역물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검역기관의 장이</p>		<p>1.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2. 수산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정밀검사  ④ 수산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p>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2.29&gt;</p> <p>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b>제30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b></p> <p>수산물검역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결과 그 물건이 수산물 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1. 항구: 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동해항·평택항·목포항·통영항·삼천포항·여수항·포항항·완도항·속초항</p> <p>2. 공항: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p> <p>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통관역) 및 통관장</p> <p>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31조(수출검역 등)</b> ①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출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2.29&gt;</p> <p>②지정검역물 외의 수산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p> <p>④수산동물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출검역에서 그 물</p>		<p><b>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b>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건이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검역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문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32조(검역시행장)</b> ①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입 검역과 수출검역은 각각 지정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이 아닌 곳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li> <li>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동물양식시설 또는 수산동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때</li> </ol>	<p><b>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b>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무는 지정검역물 중 식용인 것에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li> <li>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li> <li>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 대한 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협조 및 송부협조에 관한 사항</li> <li>검역장소의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li> </ol>	<p>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b>제35조(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신청 등)</b>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시설을 지정하려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한 수산동물전염병이 인근 수산동물 양식시설에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lt;개정 2009.10.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상수조(陸上水曹) 보관시설</li> <li>육상수조[축제식(築堤式)을 포함한다] 양식시설</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3. 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p> <p>②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이 가능한 장소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③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장소를 검역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④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p>	<p>제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수산동물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p> <p>②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3. 수족관 시설</p> <p>4. 저온 창고시설</p> <p>5.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이식용으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4조에 따른 고도회유성어종(高度回游性魚種)에만 해당한다]</p> <p>②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10.21, 2010.4.28&gt;</p> <p>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역을 위한 시설·장비 등이 기준에 미달한 때</li> <li>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li> </ol> <p>⑥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에서의 검역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룻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로 인정받은 때</li> <li>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한다)</li> <li>나.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li> <li>다.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li> <li>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li> </ol> <p>2. 제1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li> <li>나.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어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을 증명하는 서류</li> <li>다. 제1호다목 및 라목</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장소를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①수 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 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 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금액은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p>		<p>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 소의 시설 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①법 제 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 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검역물의 보관비</li> <li>2. 검역시행장에서 지정검역물을 입 출고·하역하는 데에 드는 비용</li> <li>3. 검역기간 중의 지정검역물 소득비</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li> <li>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ol> <p>④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li> <li>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한 때</li> <li>3.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li> </ol>		<p>②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p> <p>③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⑤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li> <li>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li> <li>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li> <li>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li> <li>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⑥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그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⑦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 기준을 포함한다)·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b>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b> ①수산동물검역관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화주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li> <li>2.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li> <li>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li> <li>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li> <li>5.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②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 대상물건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 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불합격된 검역물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p> <p><b>제35조(재검역)</b> ①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동물검역관 외의 수산동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른 재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li> <li>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li> </ol> <p>③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p> <p><b>제36조(검역판정의 취소)</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 또는 제35조에 따른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과건검역·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b>제37조(수입위험분석)</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수산동물 및 수중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동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수입위험분석의 실시방법 및 절차</p>		<p><b>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b> ①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질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경우</li> <li>2. 특정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자주 발견된 경우</li> <li>3. 특정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새로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동물질병 확인 단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li> <li>2. 수산동물질병 위험평가 단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수산동물양식산업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li> <li>3. 수산동물질병 위험관리 단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li> </ol>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보칙</b></p> <p><b>제38조(방역교육)</b>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의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이하 "방역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방역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p>		<p>③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수입위험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3조 제2항·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범위 변경 여부</li> <li>2. 수산동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li> <li>3.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변경 여부</li> </ol> <p><b>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b>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의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동물 양식을 위한 신고,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li> </ol>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p>2. 수면적(수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동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p> <p>3.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낚시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p> <p>4.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p> <p>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li> <li>2. 수산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3. 그 밖에 수산동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수산동물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교재의 편찬·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수산동물관련단체 또는 수산동물양식자 등의 의뢰를 받아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의 시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기준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의 실시)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술”이라 한다)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동물질병예방기술 시험·분석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질병예방기술에 관한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방법·공중위생학적 방법·독성학적 방법·생물학적 방법·미생물학적 방법·역학적 방법 등으로</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양식시설에서 수산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물양식자에게</p>		<p>시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0조(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법 제40조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동물 체내의 잔류물로 인한 국민건강에의 위해</li> <li>2. 수질 또는 수중 생태계의 심각한 오염이나 파괴</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해당 수산동물용의약품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b>제41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b></p> <p>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동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동물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이 있는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 및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따라 관리자가 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42조(보상금 등)</b>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동물</li> <li>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수산동물(출하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li> <li>3.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수산동물</li> <li>4.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동물(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li> </ol>	<p><b>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b>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동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동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동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5.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p> <p>6.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동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수산동물양식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제1항·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43조(비용의 지원 등)</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양식자의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수준이 우수한 어가(어가) 또는 어촌계에 대하여 소득 등 수산동물질병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약할 경우</li> <li>2. 제16조에 따라 살처분할 경우</li> <li>3.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li> </ol>	<p><b>제17조(방역비용의 지원)</b> ①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li> <li>2. 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및 법 제18조에 따른 소득·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li> </ol>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4. 제17조제3항에 따라 오염방지 조치를 할 경우</p> <p>5. 제18조에 따라 오염물건을 소독·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p> <p>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b>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어가)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어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해당 어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어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44조(보고)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자와 수산동물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p>	<p>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동물의 종류별·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생계안정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p>	<p>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도지사가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지역</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막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b>제45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lt;개정2008.2.29&gt;)</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동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됨으로써 수산동물의 생산 또는 국민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전</p>		<p>3. 대상수산동물명</p> <p>4. 기간</p> <p>5. 조치내용</p> <p>6.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또는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③제34조는 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하는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중 "수산동물검역관"은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본다.</p> <p><b>제46조(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b>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병성감정 또는 역학조사의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청장에게 제13조제1항·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b>제47조(수산동물방역관 등의 증표)</b>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수산동물방역관·수산동물검역관 및 수산동물방역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b>제48조(명예감시원)</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고, 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 예찰(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양식자·사료판매업자·수산동물용의약품판매업자·수산동물운송업자 등을 명예수산동물방역감</p>		<p><b>제42조(수산동물방역관 등의 증표)</b>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 수산동물검역관 및 수산동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p> <p><b>제43조(명예감시원의 위촉)</b> ①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동물양식자</li> <li>2. 사료판매업자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판매업자</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명예감시원의 위촉절차·임무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3. 수산동물운송업자</p> <p>4. 수산동물방역사</p> <p>5. 사료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단체의 소속 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p> <p>6.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p> <p>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 증상 등이 있는 수산동물의 신고</li> <li>2. 수산동물전염병이나 그 밖의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예찰</li> <li>3.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군수</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49조(사법경찰권) 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검역관은 이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p> <p>제50조(수수료)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의뢰자 및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p>		<p>· 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p> <p>③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군수</p> <p>·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p> <p>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p> <p>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제39조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의뢰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검역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③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내용의 오류 등 민원인의 과실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li> <li>2.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li> <li>3. 민원인의 과실 없이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li> </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b>제51조(청문)</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실 시기관 지정취소</li> <li>2.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li> <li>3.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li> <li>4. 제33조제4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li> <li>5.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송차량의 지정취소</li> </ol> <p><b>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b> ①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p>	<p><b>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b>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li> </ol>	

수산물질병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4항의 시료채취 및 제38조제1항의 방역교육의 업무를 수산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③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④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관리에 사용되는</p>	<p>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p> <p>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방역관의 임명</p> <p>4.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방역에 관한 교육</p> <p>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방역관의 위촉</p> <p>6. 법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병성감정)에 관한 사항</p> <p>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p> <p>8.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검사등증서의 교부</p> <p>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동물의 검사</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의 시험·분석 1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긴급조치 1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물방역감시원의 위촉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동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과건검역 3.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p> <p>4. 법 제35조에 따른 재검역</p> <p>5. 법 제36조에 따른 검역판정의 취소 및 재검역</p> <p>6. 법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p> <p>③시·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 수산동물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p> <p>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p> <p>⑥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벌칙</b></p> <p><b>제53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i><li>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한 자</li><li>3.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i><li>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li><li>5. 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li></ol>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7조·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p> <p>7.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장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p> <p>8. 제34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9. 제40조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b>제54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p> <p>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4.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p> <p>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p> <p>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p> <p>7.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독·소각 또는 매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8.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9.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동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자</p> <p>11.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p> <p>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p> <p><b>제55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p> <p>2.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하고 수산동물의 사체를 이동·매몰 또는 소각한 자</p> <p>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한 자</p> <p>4.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발굴한 자</p> <p><b>제56조(양벌규정)</b>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p> <p>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위반</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p> <p><b>제57조(과태료)</b>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투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i> <li>2.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li> <li>3.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li> </ol>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b>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1. 제7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2.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산동물검역관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4.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lt;개정 2008.2.29&gt;</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p> <p>제58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54조제7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②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li> <li>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li> </ol> <p>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9조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p>		<p>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p> <p>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p> <p><b>제59조(통고처분)</b> ①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li> <li>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li> </ol> <p>②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p>	<p><b>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b>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률 규정,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p> <p>②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4와 같다.</p> <p>③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수는 범칙행위의 위반정도에 따라 이 법으로 정하는 벌금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60조(범칙금의 납부)</b> ①제59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p>	<p>보내야 한다.</p> <p>④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 이내에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b>제61조(통고처분의 효과)</b>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p> <p>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제60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lt;제8789호,2007.12.21&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하고,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이식용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았거나 검역이 진행 중인 이식용수산동물은 제27조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았거나 수입검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p>	<p>부칙 &lt;제21174호,2008.12.22&gt;</p> <p>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45호,2008.12.22&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생약정 체결 등에 따른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의 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2009년 2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는다.</p> <p>부칙 &lt;제60호,2009.2.24&gt;</p> <p>이 규칙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66호,2009.4.17&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p> <p>②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t;개정 2008.2.29&gt;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물(「수산업법」 제77조</p>		<p>부칙 &lt;제87호,2009.10.21&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lt;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4.28&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1항제4호에 따른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정부조직법)</b> <b>&lt;제8852호,2008.2.29&gt;</b></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lt;생략&gt;…,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⑥부터 ⑨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b> <b>&lt;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2010.5.31&gt;</b></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 및 제3조 생략</b></p> <p><b>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 및 ② 생략</p> <p>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5호 중 “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p> <p>제32조제1항제2호 중 “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 「수산자원관</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656&gt; 까지 생략</p> <p>&lt;657&gt;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p>		<p>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p> <p>제34조제1항제1호 중 “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p> <p>④ 생략</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p>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p>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40조 후단을 삭제한다.</p> <p>부칙 제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lt;658&gt; 부터 &lt;760&gt;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동물의약품의 투약으로 죽은 수산동물: 검사 또는 투약 당시의 그 수산동물의 평가액
  -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동물의약품의 투약으로 부상당한 수산동물: 부상 수산동물의 진료비나 부상 수산동물과 정상 수산동물의 출하가격의 차액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손해: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
  -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수산동물: 살처분 당시의 그 수산동물의 평가액
  - 마.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닌 수산동물의 사체로 확인된 수산동물: 이동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
  - 바. 법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평가액
  - 사. 법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동물: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 다만, 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폐사(弊死)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상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의 사체를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제1호에 따른 보상금에서 뺄 수 있다.

[별표 2]

보상금의 감액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동물을 발견한 후 1일에서 3일까지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동물을 발견한 후 4일에서 6일까지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동물을 발견한 후 6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3을 감액하여 지급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살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2.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감액을 합산하여 감액한다. 다만, 합산한 총감액금액은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7조제5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50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투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 제1항제1호	70	150	250
3.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2호·제3호	50	100	150
4. 법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법 제57조 제1항제2호	70	150	250
5.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4호	50	100	150
6. 법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57조 제1항제3호	70	150	250
(비고)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2항 관련)

(단위: 만원)

범칙행위	해당 법률 규정	범칙 금액
1.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독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58조제1항	100
2.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각명령 또는 매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58조제1항	200

[별지 제1호서식]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수거증명서		
채취·수거장소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
채취·수거 시료(물건) 등의 소유자(관리자)		
채취·수거 품명		
채취·수거 수량		
채취·수거 사유		
채취·수거 일시		
채취·수거된 시료(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참석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비고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4항·제8조제2항·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료(물건) 등을 채취·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수거자      소      속:</p> <p style="text-align: center;">직위(직급):</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b>역학조사반원증</b>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사진                      (2.5cm×3cm)                 </div>
위 사람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b>국립수산과학원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56mm×80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1. 이 증표를 지닌 자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표를 주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1. 규격: 가로 56mm, 세로 80mm  
 2. 바탕색: 노란색

[별지 제31호서식]

통고서 번호: **범칙금 수납의뢰서**  
(수납기관보관용)

- 범칙자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범칙자 주소:

- 연도:
- 계좌번호:
- 일반회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수입징수관서: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칙금 수납을 의뢰합니다.

의뢰일:       년   월   일

납부기한	
금 액	

※ 납부기한이 지난 범칙금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수납자인
------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통고서 번호: **범칙금 영수통지서**  
(발급기관송부용)

- 범칙자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범칙자 주소:

- 연도
- 계좌번호:
- 일반회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수입징수관서: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납부기한	
금 액	

한국은행 본점·지점,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수납자인	취급점 영수인
은행   지점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통고서 번호: **범칙금 영수증서**  
(납부자보관용)

- 범칙자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
- 범칙자 주소: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통고일:       년   월   일

적발일시	
위반장소	
해당 법조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8조제1항·같은 법 제54조제7호·같은 법 제58조제1항
위반내용	
납부기한	
금 액	

※ 납부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한국은행 본점·지점,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수납자인	취급점 영수인
은행   지점		

297mm×21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b>수산동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b>					
수산동물양식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검 사 내 역	검사의 목 적			검 사 연월일	
	검사방법				
검 사 수산동물	품 종	성숙 정도	수 량	특 징	검사 결과
검사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b>수산동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b>					
수산동물양식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투 약 내 용	실 시 목 적			실 시 연월일	
	약품명(제조업체명)	투약방법		투 약 량	
투 약 수산동물	품 종	성숙 정도	수 량	특 징	실시 횟수
검사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약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수산동물 격리·이동제한 명령서				
명령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격리		<input type="checkbox"/> 이동제한	
수산동물 보관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령 내용	명령이유		수량	기간
명령 대상 수산동물	품종	성숙정도	특징	비고
준수 사항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이동제한할 것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수산동물 살처분 명령서				
수산동물 양식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살처분 명령의 내용	살처분 이유		수량	이행기한
살처분 명령 대상 수산동물	품종	성숙정도	특징	비고
준수 사항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오염물건 소독·소각·매물 명령서					
명령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소독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매물
대상 시설 (대상 물건)	시설명 (물건명)	수 량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명령 내용	명 령 이 유		이 행 기 한		
준수 사항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소각·매물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수산동물방역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직인</span>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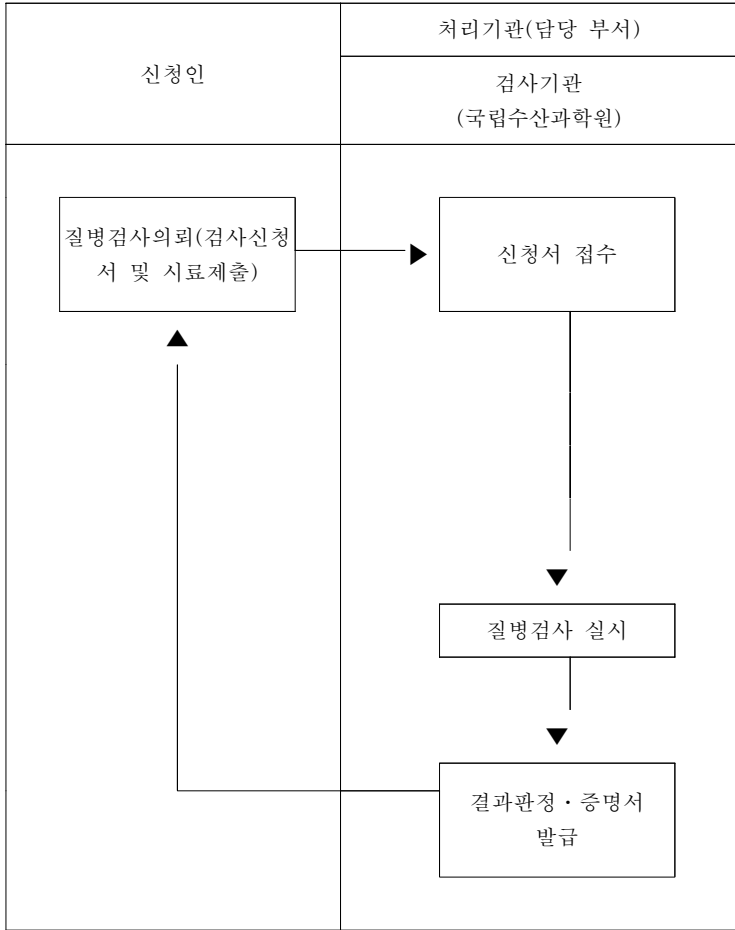
(앞 쪽)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업체명		(전화번호: )	
	주 소				
종료 관련 사항	품 종	개 체수, 크기(cm)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품종지정		농림수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자( )		
	수송방법				
	방류수량 (사업금액, 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수산동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물: 검사시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9호서식]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신청인			접수일		
검사시료	품 종		크기(cm)		
임상검사 결 과	육안적 관 찰		기타검사 결 과		
정밀검사 결 과	검사 항목	합격 기준	검사 결과	판정	비고
종합 의견					
검사 비용	신청인 부담( ),		수산동물양식자 부담( )		
검사 기간					
※ 이 질병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수산동물의 전염병검사 결과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b>국립수산과학원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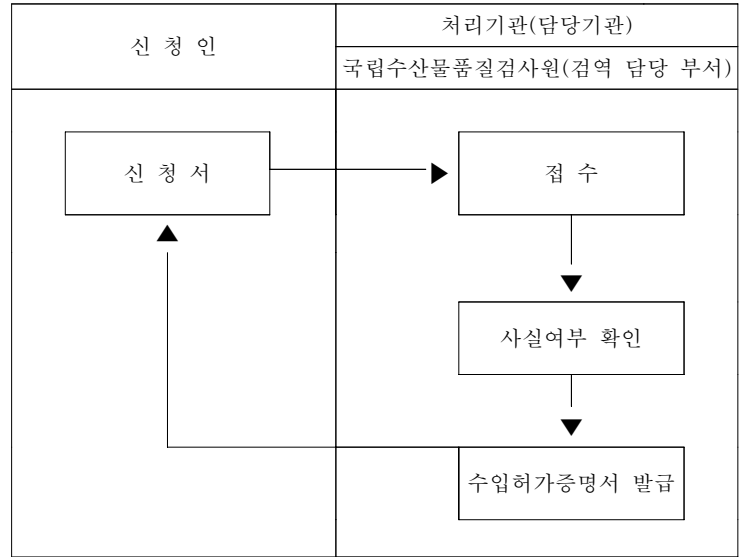
(앞 쪽)

수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① 신청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				
	주소					
② 내용	수입국가	품명(학명)	중량(kg)	수송방법	도착항	도착예정일
③ 수입목적						
④ 용도						
⑤ 관리방법			⑥ 관리장소			
⑦ 사용기간			⑧ 사용 후 처리방법			
⑨ 관리 책임자	성명	직책	주요임무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p>						
※ 첨부서류						수수료
1.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현황 2. 전문인력 확보현황 2. 안전관리계획서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작성 요령

- ① 신청인: 해당 검역물의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② 내용: 수입국가, 품명(학명), 중량, 수송방법(선박, 비행기 등), 도착항(국내도착항) 등을 적습니다.
- ③ 수입목적: 수입목적 등을 적습니다.
- ④ 용도: 시험·연구조사용, 진료, 예방약 조제 등 용도를 적습니다.
- ⑤ 관리방법: 해당 검역물의 관리방법을 적습니다.
- ⑥ 관리장소: 해당 검역물의 관리장소를 적습니다.
- ⑦ 사용기간: 해당 검역물의 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⑧ 사용 후 처리방법: 해당 검역물의 사용 후 처리방법(소각·매몰 등)을 적습니다.
- ⑨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주요임무를 적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Fr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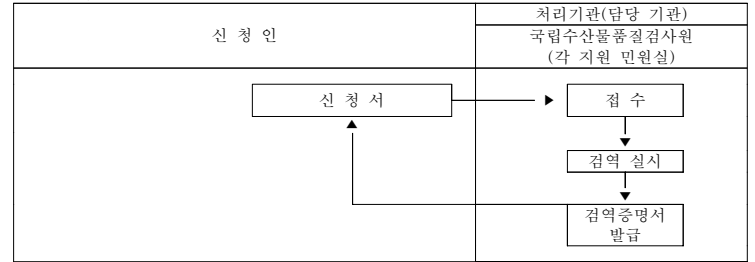
<b>수입(재)검역 신청서</b> (APPLICATION FOR IMPORT AQUATIC ANIMAL QUARANTINE)		처리기간			
				1. 서류검사: 2일 2. 임상검사: 3일 3. 정밀검사: 15일 ※ 처리기간 산정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① 신청번호 (Application No.)		② 신청일(Date of application)		③ 화물관리번호 (Cargo Management No.)	
④ 입항일(Date of Arrival)		⑤ 선(기)명(Name of Ship or Flight)		⑥ 신청인(Applicant)	
				성명(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	
⑦ 품명(Common name /Scientific name)					
⑧ 규격(Size)		⑨ 자연/양식산(Wild/Cultured stocks)		자연산(Wild stocks) <input type="checkbox"/> 양식산(Cultured stocks) <input type="checkbox"/>	
⑩ 개수(Quantity, C/T)		⑪ 중량(Total weight or number)			
⑫ 금액(Value, US\$)		⑬ 용도(Use)			
⑭ 수출국(Country of Export)		⑮ 원산지(Country of Origin)			
⑯ 생산시설(Aquaculture establishment)	업체명(Company name) 주소(Address)	등록시설번호(Registered serial No.)			
⑰ 수출자(Exporter)	업체명(Company name) 주소(Address)				
⑱ 선적항(Port of Shipping)		⑲ 선적일(Date of Shipping)			
⑳ 도착항(Port of Arrival)					
㉑ 검역시행장(Quarantine facility)	시행장명(Facility name)	지정번호(Registration No.)			
	수용일(Date of reception)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수산물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in accordance with Item 1 of Article 27, Item 1 of Article 35 of the Aquatic Animal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1 of Article 30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00지원장 귀하 To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 Branch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 쪽)(Back)

첨부서류	수수료
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별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3.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별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4. 수산동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에만 해당함)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0,000원 (수입인지/전자결제)

○ 처리 절차



○ 작성 요령

- ① 신청번호: 신청자는 적지 않습니다.
- ② 신청일: 검역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 ③ 화물번호: 해당 검역물의 화물관리번호 적되, 화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입항일: 해당 검역물의 국내 지정항구에 입항일자를 적습니다.
- ⑤ 선(기)명: 해당 검역물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⑥ 신청인: 해당 검역물을 검역기관에 신청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 ⑦ 품 명: 해당 검역물에 대한 품종을 표준어로 한글명(영어명)과 학명으로 적습니다.
- ⑧ 규 격: 해당 검역물의 크기(cm, g, kg) 등을 적습니다.
- ⑨ 자연/양식산: 자연산 또는 양식산을 선택해 적습니다.
- ⑩ 개 수: 해당 검역물의 CT 수를 적되, 컨테이너를 이용한 벌크로 수입할 때에는 포장개수를 컨테이너 수로 적습니다.
- ⑪ 중 량: 해당 검역물의 중량(kg)을 기본으로 적고 필요시 괄호 안에 마리수(EA), 림 등을 적습니다.
- ⑫ 금 액: 해당 검역물의 수입금액(US\$)을 적습니다.
- ⑬ 용 도: 식용, 이식용, 관상용, 시험·조사연구용으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도록 적습니다.
- ⑭ 수출 국: 해당 검역물의 수출국가명을 영어명 또는 한글로 적습니다.
- ⑮ 원 산 지: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을 영어명 또는 한글로 적습니다.
- ⑯ 생산시설: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의 업체명, 등록시설번호(한국과 약체제결한 경우에만 해당함), 주소 등을 적습니다.
- ⑰ 수출자: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는 업체와 주소를 적습니다.
- ⑱ 선적항: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항구 또는 공항을 적되, 해당 검역의 원산지 및 수출국이 다른 경우 경로별로 일자자를 자세히 적고 특히, 경유한 경우 그 사유와 일자자를 적습니다.
- ⑲ 선적일: 해당 검역물 선적한 일자자를 항구별로 적습니다.
- ⑳ 도착항: 해당 검역물이 도착하는 항구 또는 공항을 적습니다.
- ㉑ 검역시행장: 해당 검역물을 입고 또는 입고 예정인 정부 승인 검역장의 명칭, 지정번호, 수용일자, 검역희망일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b>수입검역 증명서</b>			
신청인	성 명		업체명
	주 소		
품 명		규 격	
개수(C/T)		중량(kg)	
금액(US\$)		용 도	
수 출 국	원산지		
생산시설			
수 출 자			
비 고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수산동물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Fr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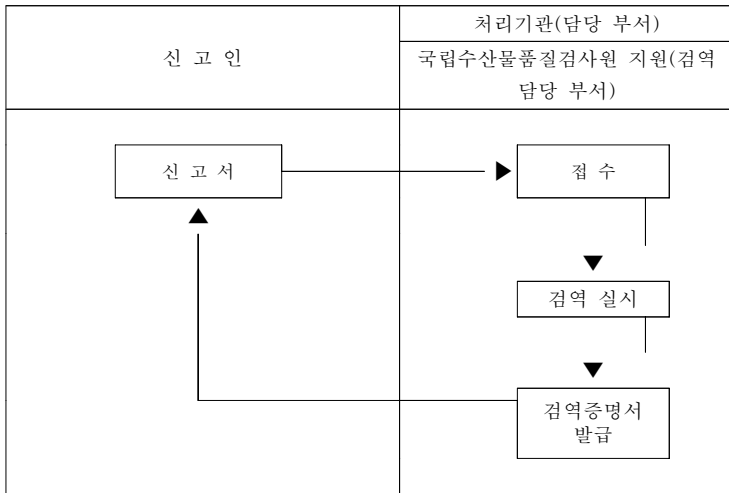
<b>수입수산동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b> (DECLARATION FOR IMPORT AQUATIC ANIMAL QUARANTINE FOR HAND-CARRIED BAGGAGES)						처리기간
						즉 시
① 신고번호 (Declaration No.)			② 신고일(Date)			
③ 신고자 (Declarer)	성 명 (Name)	여 권 번 호 (Passport No.)				
	국 적 (Country)	성 별(Sex)	<input type="checkbox"/> 남성(Male) <input type="checkbox"/> 여성(Female)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Tel : )				
④ 검역대상품 (Quarantine objective)	품 명 (Common name /Scientific name)	개 수 (Quantity, C/T)	중 량 (Total weight or number)	금 액 (Value, US\$)	수입국 (Country of import)	원산지 (Country of origin)
⑤ 용 도 (Use) ( )						
⑥ 선명 또는 항공편명 (Name of Ship or Flight)			⑦ 그 밖의 사항 (Etc.)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동물검역을 신고합니다.</p> <p>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animal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7 of the Aquatic animals Disease Control Act and Article 31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p> <p style="text-align: right;">년(Year) 월(Month) 일(Day)</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p> <p style="text-align: center;"><b>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00지원장</b>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To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 Branch</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서류 (뒤 쪽)(Back)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작성 요령

- 신고번호: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 신고일: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
- 신고자: 해당 휴대물품 검역물을 신고한 자의 성명, 여권번호, 국적, 성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검역대상품: 해당 휴대물품 검역물의 한글명(영어명)과 학명 및 개수(C/T), 중량(kg 또는 개수), 수입국, 원산지를 각각 적습니다.
- 용도: 관상용으로 적고, 괄호 안에는 판매용, 자가관상용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선명 또는 항공편명: 해당 휴대물품 검역물을 운송한 선박명 또는 항공편명을 적습니다.
- 그 밖의 사항: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18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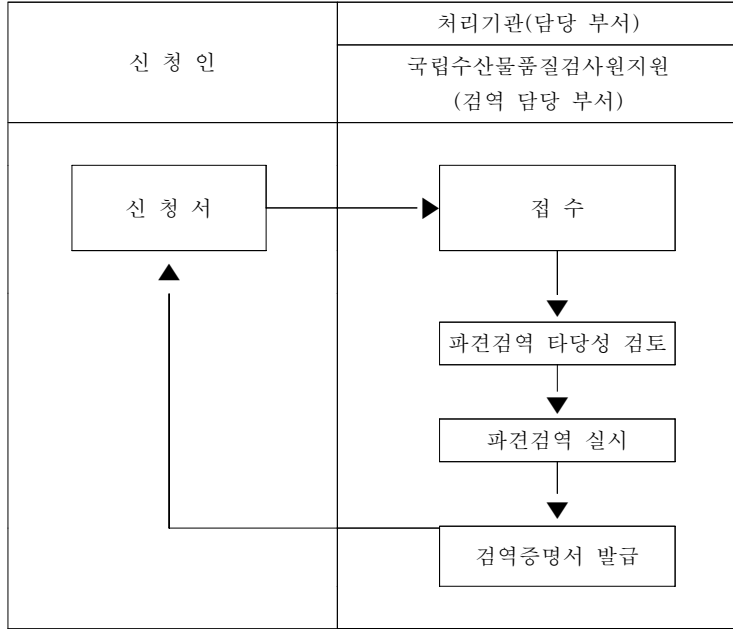
(앞 쪽)

<b>파견검역 신청서</b>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② 파견국가 및 지역		③ 파견기간			
④ 검역기관명 및 주소					
⑤ 파견검역 신청사유					
⑥ 정밀검사 방법	<input type="checkbox"/> 현지 검역기관에서 정밀검사 희망 <input type="checkbox"/> 국내반입 후 정밀검사 희망				
⑦ 지정검역 대상 수산 동물	품명	학명	규격	중량(kg)	금액(US\$)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견검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00지원장</b> 귀하					
※ 첨부서류 1. 파견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2. 이식승인서사본(「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수산동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계 유지 등 관리감독 이행을 위한 서약서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 쪽)

○ 처리 절차



○ 작성 요령

- ① 신청인: 신청인 성명, 상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 ② 파견국가 및 지역: 파견검역 국가명 및 지역을 적습니다.
- ③ 파견기간: 파견검역기간을 적습니다.
- ④ 검역기관명 및 주소: 검역을 실시하게 될 기관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 ⑤ 파견검역 신청사유: 파견검역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자세히 적습니다.
- ⑥ 정밀검사 방법: 희망하는 정밀검사 방법에 V 표시를 합니다.
- ⑥ 지정검역 대상 수산물: 품명, 학명, 중량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b>파견검역 증명서</b> (수입수산물 검역신청 시 제출용)					
신청인	성 명				
	주 소				
파견국가 및 지역					
검역 기간					
검역 결과					
증 명 내 용					
품 명	학 명	규 격	중량(kg)	금액(US\$)	보관장소
「수산물질병 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산물검역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산물검역관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제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Front)

<b>수출(재)검역 신청서</b> (APPLICATION FOR EXPORT AQUATIC ANIMAL QUARANTINE)		처리기간	
		1. 서류검사: 2일 2. 임상검사: 3일 3. 정밀검사: 15일 ※ 처리기간의 가산일은 검역회 명일부터 산정합니다.	
① 신청번호 (Application No.)		②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③ 수출자 (Exporter)	성명 (Name)	업체명 (Company nam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 )	
④ 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	성명 (Name)	업체명 (Company nam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 )	
⑤ 품명 (Common name/Scientific name)		⑥ 규격 (Size)	
⑦ 개수 (Quantity, C/T)		⑧ 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⑨ 금액 (Value, US\$)		⑩ 용도 (Use)	
⑪ 수입자 (Importer)	회사명 (Company name)		
	주소 (Address)		
⑫ 선적항 (Port of shipping)		⑬ 선적일 (Date of shipping)	
⑭ 목적지 (Place of destination)		⑮ 운송수단 (Mean of conveyance)	
⑯ 검역시행장 (Quarantine facility)	시행장명 (Facility name)	지정번호 (Registration No.)	
	수용일자 (Date of reception)	검역회망일 (Expected date of quarantine)	
⑰ 수입국 요구질병항목 (List of disease requested by import country)			
「수산물질병 관리법」 제31조,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수산물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anim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Item 1 of Article 35 of the Aquatic Animal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1 of Article 34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b>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00지원장</b> 귀하 To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OO Branch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b>수출검역 증명서</b>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Republic of Korea (HEALTH CERTIFICATE OF LIVE AQUATIC ANIMAL QUARANTINE)			
검역증번호 (Certificate No.):			
수출자 (Exporter)	성명 (Name)	상호 (Company name)	
	주소 (Address)		
수입자 (Importer)	성명 (Name)	상호 (Company name)	
	주소 (Address)		
품명 (Common name)		학명 (Scientific name)	
개수 (Quantity, C/T)		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	성명 (Name)	상호 (Company name)	
	주소 (Address)		
검역대상질병 (Specified disease)			
선적항 (Port of shipping)		선적일 (Date of shipping)	
도착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운송수단 (Mean of conveyance)	
비고 (Remark)			
위의 수산동물은 「수산물질병 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검역하였으며, 위의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quatic animals described above have been quarant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Aquatic animal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4 of Article 34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and that they are free from the specified disease described above.			
발행 연 월 일 (Date of Issue):			
<b>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OO지원장</b> <input type="checkbox"/>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OO Branch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10.21>

<b>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b>					처리기간	
					15일	
대표자성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육상수조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시설			
검역대상물						
검역관리인	성 명		자 격			
지정 신청 면적 (수조수)	면적: m <sup>2</sup> ( 조)					
용수관리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	유입수	환수량	톤/일	배출수	환수량	톤/일
		소독방법			소독방법	
변경내용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변경)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p> <p>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지원장 귀하</p>						
<p>※ 첨부서류</p> <p>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한다)</p> <p>나.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p> <p>다.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p> <p>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p> <p>2. 제35조제1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p> <p>나.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어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을 증명하는 서류</p> <p>다. 제1호다목 및 라목</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10.21>

(앞 쪽)

제 호						
<b>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b>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검역시행장소명						
검역시행장 주소	(전화번호: )					
지 정 사 항						
검역대상물						
검역관리인 성 명						
검역관리인 임 무						
지정면적 (수조수)	면적 : m <sup>2</sup> ( 조)					
용수관리(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	유입수	환수량	톤/일	배출수	환수량	톤/일
		소독방법			소독방법	
지정기간						
지정조건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00지원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p>						
<p>※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시 변경내용을 뒤쪽에 적습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 쪽)

년 월 일	구 분	처 음	변 경	확인(날인)

[별지 제24호서식]

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				
명령대상자	성 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명령대상물	품 종 명			
	중량(kg, 마리)			
이행기한				
장 소				
방 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00지원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적 인</span>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제 호	
<b>수산동물방역관증</b>	
소속:	사 진 (2.5cm×3cm)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직인

56mm×80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9.4.17>

제 호	
<b>수산동물검역관증</b>	
소속:	사 진 (2.5cm×3cm)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수산동물검역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직인

56mm×80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별지 제30호서식]

<b>범칙자 적발보고서</b>				결재
제 호 수신자: 국립수산과학원장 체 목: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위반행위 적발보고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8조제1항·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에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독·소각 또는 매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보고합니다.				
범칙자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범칙 행위	일시/장소			
	위반내용			
<b>국립수산과학원</b> <b>시·도</b> 특별사법경찰관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제활용품)]

[별표 1]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소각기준

가. 수산동물의 사체

- 1)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 2) 태운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나. 오염 물건(사료·기구·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1)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건이 소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 2) 태운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매몰기준

가. 매몰의 준비

매몰장소는 수원지·하천·바다·수산동물양식장 및 가공시설·도로 및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나. 수산동물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 1)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5m 이상 되도록 파야 한다.
- 2)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덮는다.
- 3)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위에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사체 1,000kg당 85kg 비율로 뿌린다.
- 4) 사체를 투입하고 다시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복토를 하고,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를 한다.
- 5)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덕을 쌓는다.

다. 수산동물의 사체를 열처리정제시설에서 열처리하여 그 잔재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2]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20조제2항 관련)

1.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수산동물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한다.
  -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체에 톱밥을 뿌리고 1.5m 이상 흙을 쌓는다.
  -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때에는 톱밥을 충분히 뿌린다.
  -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
  - 마.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3. 수산동물의 사체를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한다.

[별표 3]

수산동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배점기준

가.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구분	배점표				
	20점	15점	10점	5점	0점
마지막 발생일 기준	5년 초과	3년 초과 5년	2년 초과 3년	1년 초과 2년	1년 이하

나. 방역 및 위생관리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 소독실시	가) 1년 이상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 보관	2개 모두 적합	20
	나) 소독약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소독약품을 제외한다)구입 · 사용	1개 적합	10
		모두 부적합	0
2) 환경·위생 관리	가) 사체 처리용도의 소각로 설치(위탁 처리를 포함한다) 나) 병든 수산동물의 격리시설 설치	2개 모두 적합	20
		1개 적합	10
		모두 부적합	0
3) 수산동물의 거래 기록유지	가) 1년 이상의 수산동물의 구입기록 보관 나) 1년 이상의 수산동물의 출하 또는 판매기록 보관	2개 모두 적합	20
		1개 적합	10
		모두 부적합	0
4) 방역교육	가) 최근 1년간 수산관련단체의 방역교육 참석 나) 최근 1년간 고용된 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2개 모두 적합	20
		1개 적합	10
		모두 부적합	0

2. 등급판정기준

가. 1등급: 80점 이상

나. 2등급: 60점 이상 80점 미만

다. 3등급: 40점 이상 60점 미만

라. 4등급: 40점 미만

[별표 3의2] <신설 2009.2.24>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제28조제1항제9호 관련)

구분	종류
1.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전염병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전염성채장괴사증
2.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한 수산동물전염병 중 국내외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수산동물전염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전염성피하및조혈괴사증



[별표 4]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표지(제30조제3항 단서 관련)

모 형	규 격	용 도	비 고
	지 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깥 원: 40mm</li> <li>안의 원: 25mm</li> </ul>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스티커로 제작된 검역표지를 부착	스티커
	글자의 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의 원: 1mm</li> <li>바깥 원: 1mm</li> </ul>		

[별표 5]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보관관리 기준(제36제3항 관련)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

가. 활어차

- 1) 운행 중에 누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2) 지정검역물 2개 품목 이상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간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칸을 막아야 한다.
- 3) 수조 칸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4) 수조 칸별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활어차 외의 차량

- 1)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는 수송 중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운송용기는 태양광선·비·눈 등으로부터 검역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폐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수산동물전염병 병원체 등이 운송용기 외부로 퍼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다. 공통: 운송차량은 전면 또는 측면에 수산동물 지정 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검역물은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지정검역물의 입출고·보관관리기준

가.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명, 검역종료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목명, 입고일시, 검역종료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만 출고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보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

1.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가. 병성감정신청: 건당 20,000원

나. 정밀검사료

항목	수수료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2)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3)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비고: 수수료는 해당항목 건별로 적용한다.

2. 지경검역물 검역수수료

가. 검역신청 : 건당 20,000원

나. 정밀검역료

항목	수수료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2)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3)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비고: 수수료는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한다.

3. 시험·분석의뢰 수수료

가. 수산동물용의약품의 성분분석

항목	단위	수수료	비고
1) 수산동물용의약품 기기분석법	1성분/1점	248,100원	항균물질, 항생물질, 일반화학제제 등
2) 수산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학적분석법	1성분/1점	231,300원	항생물질 등
3) 수산동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흡광도법)	1성분/1점	161,300원	항균물질, 일반화학제제 등
4) 수산동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적정법)	1성분/1점	118,200원	소독제, 일반화학제제 등
5) 수산동물용의약품 특수기기분석법(ICP 분석법)	1성분/1점	361,000원	미량광물질 등
6) 수산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함량분석	1성분/1점	154,000원	세균 등

7) 수산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함량분석	1성분/1점	257,200원	바이러스 등
8) 병원성세균에 대한 실험실내 항균효과 분석	1성분/1점	147,000원	
9) 그 밖의 성분분석	유사항목의 분석조건 및 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나. 병리검사시험

항목	단위	수수료	비고
1)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	1점	40,400원	
2) 투과전자현미경(Negative Staining)검사	1점	36,600원	
3) 주사전자현미경검사	1점	44,500원	
4) 병리조직검사	1점	5,000원	

다. 그 밖의 시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 외의 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가목 및 나목의 시험 중 가장 유사한 시험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따르며, 가목 및 나목의 시험 항목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뢰자가 제출한 시험의뢰 설계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라. 적용기준

- 1) 수수료에는 시험에 사용되는 수산동물의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시험을 위하여 수산동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뢰 당시의 수산동물시가에 따라 시험의뢰자가 이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2) 시험조건 및 시험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산동물질병관리법령 고시·훈령

# 목 차

## I. 농림수산물부장관 고시

1.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추가지정에 관한 고시 ..... 158
2.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 158
3. 양식제한조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159
4. 수산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고시 ..... 161
5. 수입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 162
6.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 164
7.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 165
8. 살처분수산동물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요령 ..... 167
9.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 172

## II. 농림수산물부장관 훈령

1. 소독실시요령 ..... 172
2. 명예감사원 운영요령 ..... 174
3. 수산동물방역관 직무규정 ..... 179

## III.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고시

1.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181
2. 수입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 197
3.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202

## IV. 국립수산과학원장 고시

1.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기관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204
2.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 210
3.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 211
4. 수산동물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 217

##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추가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12. 22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24호  
개정 2009. 8. 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85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수산동물전염병”이라 함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을 말한다.

부 칙(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12. 22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25호  
개정 2009. 8. 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8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방법(이하 “작성방법 등”이라 한다) 및 보존기간을 정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방법 등) ① 수산동물거래기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산동물 소유자는 수산동물거래기록 일지에 거래대상 지역 및 거래대상 수산동물의 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산동물거래기록은 수산동물의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보존기간) 수산동물거래기록 및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 거래기록일지

연번	거래일시 (년월일)	수산물 종류	연령(평균크기)	거래량(kg)
		단가(총액)	질병검사여부	운송방법 (성명/연락처)
		거래대상 지역	구입처 (업체명/대표자명)	구입처 (연락처/전화)
1				
2				
3				
4				
5				

양식제한조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12. 22 농림수산물부 고시 제2008-126호

개정 2009. 8. 25 농림수산물부 고시 제2009-28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산물양식자에 대한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물양식시설 또는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물양식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격리·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수산물양식자로 한다.

제3조(감축대상수산동물의 범위) 영 제9조에 따라 양식제한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동물의 100분의 50이하이며, 그 기준은 무게 또는 마리수로 한다.

제4조(감축방법 및 기준의 적용) 감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적용기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1. 양식제한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 수산동물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양식제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축된 후 남아 있는 감축대상 수산동물의 감축

제5조(감축명령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양식자에게 양식제한조치를 명하고자 할 경우 이를 미리 별지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수산동물의 감축시 관계 공무원 또는 수산동물방역관이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제한조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양식제한조치 대상자에 대한 방역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격리·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양식제한조치를 받은 수산동물양식자에게 6개월이내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양식제한 조치 명령서

수산동물 보관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명령의 내용	명령이유		감축규모	제한기간
명령대상 수산동물	품종	크기(중량)	특징	비 고
준수사항 (감축방법)				
양식제한조치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제한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수산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12. 22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27호

개정 2009. 8. 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88호

개정 2009. 12. 3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43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격리나 이동제한명령에 대한 수산동물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정지 명령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15조제1항의 수산동물의 격리나 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수산동물양식자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업무정지기간)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업무정지 명령의 집행)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동물운송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정지를 서면으로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수산동물운송업자가 자기관할이 아닌 경우 적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업무정지명령의 처분기간동안 별지 제1호서식의 표시증을 수산동물운송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삭 제> 2009.12.30

부 칙(2008. 12.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2009. 12.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 운송 업무정지 표시증	
수산물운송자동차 번호	
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이 표시증은 수산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를 정지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표시증으로 관계공무원외의 자는 떼어내지 못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직인)  ※ 관련법령: 수산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제5항 및 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 수입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12. 22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28호

개정 2009. 8. 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8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 금지된 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수산물전염병의 방역에 위해 발생을 차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처리시기) 「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제4조(처리방법) ① 수산물검역관은 제2조의 처리대상 물건에 대한 폐기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역관의 입회하에 화주의 부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 화주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수산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③ 수산물검역관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발행하는 멸각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처리) 수산물검역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업체에서 발행하는 멸각확인서
2. 불합격 사유 및 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

부 칙(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멸 각 확인서

①멸각업체명				②멸각방법			
③멸 각 장 소				④멸각연월일			
⑤ 멸 각 물 품	수입국	포장종류·기호·번호	품명·규격	수 량	가 격	비고	

첨부 : 확인자료(사진 등)

20 . . . .

폐기물관리업체명 (직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불합격 사유 및 조치결과서

### 1. 조치내역

대장번호	수입자	수입국	품명	중량(kg)/수	불합격 사유	비고

### 2. 조치결과 :

붙 임 : 불합격품 폐기확인 사진 1부.

상기 불합격품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입회자 : 직 (성명)

담 당	주 무	과 장	지원장	결 재

##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12. 22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29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산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정 2008. 12. 22 농림수산물부 고시 제2008-130호

제정 2009. 8. 25 농림수산물부 고시 제2009-29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교육 위탁기관) ① 방역교육은 「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별표 1의 강사인력확보 및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수료증을 교부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
3.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결과 교육 실적 및 교육 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 때
4. 방역교육과 관련한 농림수산물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때

제5조(교육실시 등) ① 제2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산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수산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3. 그 밖에 수산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③ 교육 위탁기관은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을 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 위탁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반기별 또는 연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수산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의 거주지역 및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과 교육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 별로 편성한다.

제7조(교육비용)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교육교재의 편찬·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을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시행규정의 승인)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 서식
6.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기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3.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4. 교육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계획의 통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 위탁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대장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결과를 통보 받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신규교육은 등록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제5조에서 규정한 교육시간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방역교육 위탁기관의 구비요건(제3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강사의 자격요건

- (1) 수산동물 질병·수산물 위생·수산동물 양식 관련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 수산동물 질병·수산물 위생·수산동물 양식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의 수산생물질병학·수산생물학·양식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 (4) 수산동물질병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 (5) 「기르는어업육성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의사로서 관련분야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강사의 확보 등

- (1) 교육기관은 가목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인 이상의 자체강사를 두어야 한다.
- (2) 교육기관은 1인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다. 강의실은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것(3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 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마. 교육기관은 휴대용 컴퓨터·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살처분수산동물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요령

제정 2008. 12. 22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31호

개정 2009. 8. 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91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검사·투약으로 인한 피해 수산동물, 격리·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 수산동물,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 수산동물 및 소독·매몰로 인한 피해 물건 등(이하 “살처분수산동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동물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 제한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동물 : 격리 또는 이동 제한명령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 3. 법 제16조에 따라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 수산동물 : 살처분 명령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4.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피해 수산동물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5. 법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물로 인한 피해 물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보상금지급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발병시점 :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료부·검안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양식장의 관리일지, 그 밖의 수산동물양식과 관련기록과 질병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2. 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시점 : 해당 수산동물양식자, 수산동물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사료·약품을 판매한 자 또는 수산동물운송업자(이하 “수산동물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최초 신고 대상 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투약에 관한 사항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에 의해 판단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 제한조치에 관한 사항 :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격리·이동제한 명령서에 의해 판단

5. 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에 관한 사항 :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서에 의해 판단

6.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동물에 관한 사항 :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안서에 의해 판단

7. 법 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오염물건에 관한 사항 :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각·매몰 명령서에 의해 판단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기준결정서를 제4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평가반) ① 살처분수산동물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수산동물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군·구의 수산동물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 수산업협동조합 등 수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수산동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동물방역관
4. 수산동물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제5조(보상금의 결정 등) ① 살처분수산동물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4조에 따른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시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수산동물등의 거래가격·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수산물공판장의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상금평가서를 발급하고 살처분수산동물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보상금지급신청) ① 살처분수산동물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의 사본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 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수산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 제한 명령서의 사본
3. 법 제16조에 따라 살처분한 수산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서의 사본(수산동물방역관이 살처분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
5. 법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오염물건에 의한 피해의 경우 :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각·매몰 명령서의 사본(수산동물방역관이 소각·매몰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지급주체가 국가 또는 시·도인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류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1. 수산동물방역관의 살처분확인서 또는 소각·매몰확인서(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살처분 및 소각·매몰의 수량 기재)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 사본

제7조(보상금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전달 받은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상금 예산으로 살처분수산동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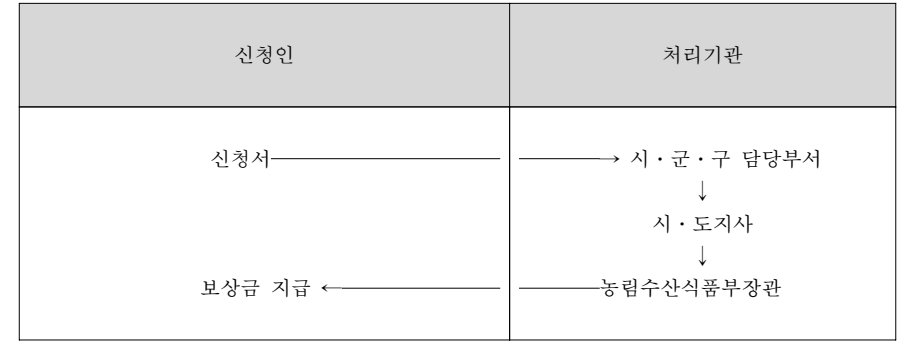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보상금지급신청서							수수료
							없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금액							
신청사유							
보상구분		<input type="checkbox"/> 검사·투약으로 인한 피해 <input type="checkbox"/>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 <input type="checkbox"/>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 <input type="checkbox"/> 소각·매몰로 인한 피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내용							
부상량(kg)	폐사량(kg)	출하제한량(kg)	살처분량(kg)	소각량(점)	매몰량(점)	평가액	신청액
계							
살처분	일시						
	장소						
소각·매몰	일시						
	방법						
	장소						
재활용의 종류 및 수량							
재활용에 의한 공제액							
살처분수산물 등 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요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의 사본(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한함) 2.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서의 사본(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한함) 3. 살처분명령서의 사본(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한함) 4.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한함) 5. 소각·매몰 명령서의 사본(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한함)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12. 22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32호  
개정 2009. 8. 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9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지원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수산동물양식자로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적용범위) ①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은 월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를 적용한다.

②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입식제한 상황이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는 입식가능 때까지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있어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입식용 수산동물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있어 영업이 중단된 종묘배양장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돕고자 부화능력이나, 영업중단기간 등을 고려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소독실시요령

제정 2008. 12. 22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 61 호  
개정 2009. 8. 25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19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수산동물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통제초소의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수산동물 및 수산동물용 약품 및 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소독의 효율성과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을 유도할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겨울철에는 결빙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조치)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행한 소독명령을 수산동물양식자 및 수산동물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하여금 대상 시설 또는 물건소재지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해당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실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소독방법) 이 요령에 의한 소독대상별 소독실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소독대상별 소독 실시 방법(제4조 관련)

소독대상	소독 실시 방법	
양식장(해면어류)	건조, 햇빛	18℃ 정도로 3달 간 건조
	건열	화염, 증기
	자외선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효과적 · virus 및 세균 : 10 mj/cm <sup>2</sup> · Myxosporidian spore : 35mj/cm <sup>2</sup> · IPNV, VNNV : 125-200mj/cm <sup>2</sup>
	오존	0.5-1mg/ℓ TRO(total residual oxidant)을 30-60분간 처리
	Sodium Hypochlorite	10mg/ℓ, 24시간
	Cloine dioxide(수산화크리나)	200mℓ/톤
	수산화마이오사이드	양어장소독, 질병예방: 120mℓ/톤 (830배 희석, 6ppm)
	키롤액	150-200ppm 양어장 물소독
	수산화-두오존/chlorine dioxide, ClO <sub>2</sub> (3%)	100-200mℓ/톤(5,000-10,000배 희석,5-10ppm
	유·에프·오액(수산화)/Chlorine dioxide, ClO <sub>2</sub> (2.5%)	예방·치료: 5-10ppm(5000배희석) 어류진균: 5-20ppm(5000배희석)
칼슘 옥사이드	0.5kg/m <sup>2</sup> 로 4주간	
양식장(내수면어류)	썬.에이.티-100(C,A,T-100)/Chloramin-T (유효염소 250g 함유)	pH6.0~8.0에 따라서 2.5~20g/물 1톤(연수, 경수구분)
권어장	일반 양식장 소독방법 참고	
부화장	키롤액	부화 및 양식에 효과, 50-100ppm
	수산화 포비딘	어란 소독에 효과적, 5mℓ/ℓ, 30분
수산시장·집판장·위판장	키롤액	150-200ppm 해산물 신선도 유지
수산동물·약품·사료 운반차량(선박)	습열	100℃ 이상의 증기로 5분동안
	오존	0.2-1mg/ℓ 에 3min
	크린 내추럴	· 유기물이 많을때- 256배 희석 · 유기물이 적을때- 64배 희석
	수산화마이오사이드	수송중 어류질병예방: 200mℓ/톤(5000배희석, 10ppm)
	iodine(iodophors)	200mg/ℓ 에서 수 초간
사료공장	건열	제조공장 내 콘크리트, 돌, 철근, 세라믹 표면 등: 화염, 건조
	습열	재료 이동시 수송 탱크 내 100도씨 이상의 증기로 5분 동안
	iodine(iodophors)	200mg/ℓ 에서 수 초간
수산동물검정기관	건열	검정기관 건물 내 콘크리트, 돌, 철근, 세라믹 표면 등: 화염, 건조
	습열	검정 시료이동시 수송 탱크내 100℃ 이상의 증기로 5분동안
	자외선	시험대 및 클린벤치 내 · virus 및 세균 : 10 mj/cm <sup>2</sup> · Myxosporidian spore : 35mj/cm <sup>2</sup> · IPNV VNNV : 125-200mj/cm <sup>2</sup>
	4급 암모늄	바이러스, 세균, 손, 플라스틱 표면: 0.1-1g/ℓ 로 1-15분
	iodine(iodophors)	200mg/ℓ 에서 수 초간
기타	오존	넓은 해양 생태계에 효과적 :양식시설에 사용시 오존가스를 방출하고 어류에 유해함

\*소독전 깨끗한 물로 표면의 유기물을 충분히 제거하여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위의 소독대상은 어란소독을 제외하면 모두 수산동물이 없는 경우에 한함.  
\*소독제의 사용시 반드시 제품회사의 사용법에 따라서 실시  
\*소독 후 배출시 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소독 후 수산동물의 제수용시 소독잔류물질의 제거나 중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정 2008. 12. 22 농림수산물부 훈령 제 62 호

개정 2009. 8. 25 농림수산물부 훈령 제120호

제1조(목적) 이 요령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등 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대상) 규칙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위촉)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단체 등의 장(이하 “해당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매분기말 10일전까지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추천한다.

②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 받은 자 중에서 별표에서 정한 명예감시원 인원 수준으로 선발·위촉한다.

③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각각 발급한다.

제4조(해촉) ①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해당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 명예감시원인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명예감시원 추천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의 신분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활동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해 역할과 임무, 신고 및 예찰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지원) ①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합동단속시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1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 3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수당 지급은 명예감시원별 계좌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명예감시원 인원(제3조제2항관련)**

위촉기관	인원(명)
국립수산과학원	100
서울	50
부산	50
대구	50
인천	50
광주	50
대전	50
울산	50
경기	50
강원	100
충북	100
충남	100
전북	100
전남	100
경북	100
경남	100
제주	100
계	1,300

[별지 제1호서식]

### 명예감시원 추천서

①성명 : 한자 :	②생년월일	사 진
③주소 : (전화번호 : ) (이동전화 : )		
④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p>위 사람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 . . .</p> <p>추천기관장 : (인)</p> <p>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명예감시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명예감시원 운영요령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p>동의 및 서약인 : (서명 또는 인)</p> <p>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p>		
※ 첨부서류 : 사진 1매 별도 첨부(3cm×4cm)		

[별지 제2호서식]

###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발행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해임일자	비고

※ 비고란에는 신규·해임 등을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발행번호 제2008- 호

위 축 장  
명예감시원

소 속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위축기간

위 사람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명예감시원  
으로 위촉함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관인)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 명예감시원증

< 앞 면 >

사 진 (3cm× 4cm)	<b>명예감시원증</b>
	발행번호 제 호 생년월일 소 속 성 명 위축기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명예수산동 물방역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b>국립수산과학원장</b> <b>시장·군수·구청장</b> (인)

< 뒷 면 >

1. 본 증을 소지한 자는 명예감시원으로서 죽거나 병든 수산  
동물의 신고, 수산동물전염병 등에 대한 예찰, 그밖에 수산동  
물방역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함
2.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내역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활동일수 (일)	지급금액 (원)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수산물방역관 직무규정

제정 2008. 12. 22 농림수산물부 훈령 제 63 호

개정 2009. 8. 25 농림수산물부 훈령 제1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수산물질병 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수산물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동물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양식 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물방역관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산물방역관의 증표 발급 등) ①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물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및 규칙 제42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산물방역관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방역관으로 임명받거나 위촉받은 자는 수산물방역관증을 발급받아 이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업무 수행 시 제시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물방역관의 업무) 수산물방역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물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산물양식시설 및 수산물집합시설 등에 들어가서 검사나 수산물질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채취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른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을 검안하였거나 진단한 경우 신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검사·주사·약육 및 투약의 실시에 관한 업무
6. 법 제14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산동물거래기록 작성·보존 및 검사등증명서 휴대에 관한 이행여부 확인 업무
7. 법 제15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 등 수산관련사업장에 대한 소독설비의 비치 및 수산관련사업장과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8. 법 제15조·제16조 및 규칙 제18조·제19조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해당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과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 및 수산동물의 살처분에 관한 업무
9.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영 제11조 및 규칙 제20조에 따른 수산동물의 사체와 오염물건의 처리 등에 관한 조치·발굴금지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40조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업무
11. 법 제42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에 관한 업무
12. 법 제43조 및 영 제17조·제18조에 따라 살처분·소각·매몰·소독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

13. 위 각호 이외에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관련법령에 따른 수산동물 전염병의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

제5조(수산동물방역관의 교육) 소속기관의 장은 수산동물방역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6조(방역업무 담당구역 등) ① 수산동물방역관이 담당하여야 하는 구역은 수산동물방역관의 소속기관 또는 위촉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동물방역관의 담당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수산동물방역관은 매주 1회 이상 제1항의 담당구역을 순회하여 수산동물질병예찰을 실시하고 관내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수산동물집합시설 등의 관계자에 대한 수산동물전염병역 지도·홍보를 실시하여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산동물방역관이 담당구역을 순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의 유무 확인
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검안 및 인근지역에 대한 확인조사
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수산동물병성감정실 시기관에 병성감정의뢰

제7조(보고 및 통보) 수산동물방역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부 칙(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2012년 8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규정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09. 2. 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9-1호

개정 2009. 3. 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9-4호

개정 2010. 9. 9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10-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검사”란 검역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임상검사”란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밀검사”란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여행자 휴대품 검역”이란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정 검역물(이식용 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5. “유해물질”이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류검사 대상) 서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첨부한 지정검역물
2. <삭 제>
3. 법 제26조에 따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지정검역물 중 최근 2년간 연 10회 이상 불합격 발생이 없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검사원장”이라 한

다)이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제4조(임상검사 대상) 임상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이식용 지정검역물 중 최근 2년간 연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발생이 없어 검사원장이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2.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다만, 이식용 지정검역물로서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신고한 휴대 지정검역물
4.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과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한 지정검역물
5. 그 밖에 정밀검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

제5조(정밀검사 대상 및 방법) ①정밀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2. 제4조에 따라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지정검역물
3.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를 검사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 중 무작위로 선정한 지정검역물
5.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중 무작위로 선정한 지정검역물
6.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중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정검역물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지정검역물은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검역물은 검사원장이 수립하는 연간 계획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외 질병발생 동향 및 방역상황, 검역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실시할 수 있다.

제5의1조(검사방법의 전환)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서류검사 대상 중 무작위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임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임상검사 대상 중 무작위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역방법 및 기준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출 지정검역물의 경우 상대국이 별도의 검역기준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검역증명서 발급기관 인정범위) ①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의 검역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의 중앙정부(연방정부를 포함한다) 수산동물 검역기관
2.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수산동물 검역기관

②제1항의 검역증명서에는 지정검역물의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학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한 검역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1.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잘못 기재되어 수입자가 제1항의 수출국 검역증명서 발행기관으로부터 실제 수입량과 동일한 수량이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2. 하나의 검역증명서로 증명된 화물이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수송되어 2개 이상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분할 하역되는 경우

3. 선적일 이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 중 선적 이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에서 선적 이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통보된 경우  
④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검역관 지명)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접수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수산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자 휴대품 검역) ① <삭 제>

②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 지정검역물은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4의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표지를 휴대 지정검역물에 붙여서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한 자(이하 “휴대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밀검사·반송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 서식(보관용, 여행자용, 검역장소 제출용)을 내주고 정밀검사를 하기 위하여 검역시행장 또는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로 운송하게 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수산동물 검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자가소비용 범위)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는 여행자 휴대 자가소비용은 총중량 5킬로그램 이내,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11조(여행자 휴대품 처분) ① 검역관은 여행자가 휴대한 수산동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하거나 소각 또는 매몰 등을 하도록 구두로 명령하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여행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휴대 지정검역물을 검색과정에서 발견한 때

2.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역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반송하거나 소각 또는 매몰 등을 하여야 한다.

③ 휴대자가 반송을 희망한 때에는 휴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수산동물 반송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휴대자가 즉시 반송하기 어려워 검역장소에 보관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밀검사·반송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보관용, 여행자용, 검역장소 제출용)을 내주고 검역장소로 운송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보관료와 반송, 소각·매몰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휴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량으로서 자가소비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한다.

## 부 칙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2009-1호, 2009. 2.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정검역물중 이식용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7-2호(2007.10.10) 「이식용 수입수산물 임상검사 대상 국가 및 품종고시」에서 정한 대상국가 및 품종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을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으로, 제1조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식물”로 하고, 제5조를 삭제한다.

②이 고시 시행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는 2009년 2월 2일부터 폐지한다.

1. 「이식용수입수산물원산지증명서제출면제대상국가및품종고시」
2. 「이식용 수입수산물 임상검사 대상 국가 및 품종고시」

#### 부 칙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2009-4호, 2009. 3.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2010-2호, 2010. 9.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과 별표의 3.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산동물전염병 항목 및 기준 1. 유행성조혈기괴사증(Epizootic haematopoietic necrosis ,EHN)의 *Salmo salar*, 2. 잉어봄바이러스병

(Spring viraemia of carp, SVC)의 *Oncorhynchus mykiss*, 3.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HS)의 *Oncorhynchus ts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nerka*, *Coregonus lavaretus*, *Coregonus clupeaformis*, *Esox masquinongy*,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Dorosoma cepedianum*, *Lota lota*, *Pleuronectes yokohamae*, *Hippoglossus hippoglossus*, *Solea senegalensis*, *Ictalurus nebulosus*, *Ictalurus punctatus*, *Neogobius melanostomus*, *Micropterus dolomieu*, *Lepomis macrochirus*, *Pomoxis nigromaculatus*, *Ambloplites rupestris*, *Lepomis gibbosus*, *Aplodinotus grunniens*, *Perca flavescens*, *Sander vitreus*, *Morone chrysops*, *Morone saxatilis*, *Morone americana*, *Sparus aurata*, *Moxostoma anisurum*, *Moxostoma macrolepidotum*, *Pimephales notatus*, *Notropis atherinoides*, *Notropis hudsonius*, *Chondrostoma polylepis*, *Danio rerio*, *Percopsis omiscomaycus*, *Lampetra fluviatilis*, *Onos mustelus*, 4. 전염성연어빈혈증(Infectious salmon anaemia, ISA)의 *Oncorhynchus kisutch*, 5.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ed sea bream iridoviral disease, RSIVD)의 *Epinephelus akaara*, *Epinephelus septemfasciatus*, *Epinephelus malabaricus*, *Epinephelus bruneus*, *Epinephelus coioides*, *Epinephelus awoara*, *Epinephelus tawina*, *Epinephelus fuscoguttatus*, *Epinephelus lanceolatus*, 6.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oi herpesvirus disease, KHD)의 *Cyprinus carpio* × *Carassius carassius*, *Carassius carassius* × *Cyprinus carpio*, 7. 유행성궤양증후군(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EUS)의 *Acanthopagrus berda*, *Ambassis agassizii*, *Ameiurus melas*, *Amniataba percoides*, *Arius sp.*, *Aseraggodes macleanus*, *Barbus*

*paludinosus*, *Barbus poechei*, *Barbus thalakanensis*, *Barbus unitaeniatus*, *Brycinus lateralis*, *Clarias gariepinus*, *Clarias ngamensis*, *Glossamia aprion*, *Glossogobius* sp., *Hepsetus odoe*, *Hydrocynus vittatus*, *Ictalurus punctatus*, *Kurtus gulliveri*, *Labeo cylindricus*, *Labeo lunatus*, *Leiopotherapon unicolor*, *Lepomis macrochirus*, *Lutjanus argentimaculatus*, *Marcusenius macrolepidotus*, *Melanotaenia splendida*, *Micralestes acutidens*, *Nematalosa erebi*, *Oreochromis andersoni*, *Oreochromis macrochir*, *Oxyeleotris lineolatus*, *Petrocephalus catostoma*, *Sargochromis carlottae*, *Sargochromis codringtonii*, *Sargochromis giardi*, *Schilbe intermedius*, *Schilbe mystus*, *Scleropages jardinii*, *Selenotoca multifasciata*, *Serranochromis angusticeps*, *Serranochromis robustus*, *Strongylura krefftii*, *Tilapia rendalli*, *Tilapia sparrmanii*, *Toxotes lorentzi*, 13. 보나미아 익시티오사 감염증(Infection with *Bonamia exitiosa*)의 *Ostrea edulis*, 14. 마르테일리아 레프리젠스 감염증(Infection with *Marteilia refringens*)의 *Ostrea denselammellosa*, *Solen marginatus*, *Chamelea gallina*, 15. 퍼킨수스 마리누스 감염증(Infection with *Perkinsus marinus*)의 *Crassostrea corteziensis*, 16.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아엔시스 감염증(Infection with *Xenohaliotis californiensis*)의 *Haliotis diversicolor*, Genus *Haliotis*, 17. 전복바이러스성 폐사증(Abalone viral mortality)의 *Haliotis laevigata* × *Haliotis rubra*, 18. 가재전염병(Crayfish plague)의 Cambaridae, Astacidae, Parastacidae, 22. 노랑머리병(Yellow head disease, YHD)의 지정검역물 *Litopenaeus vannamei*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호, 제4조제1호의 적용기준은 개정규정 시행 전

제5조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9월 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지정검역물의 검역 방법 및 기준 등(제6조 관련)

1.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가. 임상검사

1) 유명 및 행동의 정상 여부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2) 외부조건

가) 체색, 체형의 정상여부

나) 복부·아가미·안구·체표 등의 정상 여부

3) 해부학적 소견(다만, 검역관은 유명, 행동의 정상여부 및 외부 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부학적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가) 복강, 장기 등의 이상 유무

나) <삭 제>

다) <삭 제>

나. 정밀검사

검사원장이 정하는 수산동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서에 없는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생동물

진단 매뉴얼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에 의한다.

2. 지정검역물 검체 시료의 채취

가. 이식용

(단위 : 개)

신청수량	2퍼센트 발병이 의심될 때	5퍼센트 발병이 의심될 때	10퍼센트 이상 발병이 의심될 때
50 이하	50	35	20
51 내지 100	75	45	23
101 내지 250	110	50	25
251 내지 500	130	55	26
501 내지 1,500	140	55	27
1,501 내지 40,000	145	60	27
40,001 내지 100,000	145	60	27
100,001 이상	150	60	30

나.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단위 : 개)

신청수량	채취수량
50 이하	3
51 내지 100	5
101 내지 300	9
301 내지 500	13
501 내지 700	15
701 내지 1,000	17
1,001 이상	20

다. 식용

(단위 : 개)

신청수량	채취수량
1톤 미만	3
1톤 이상 3톤 미만	5
3톤 이상 5톤 미만	7
5톤 이상 10톤 미만	9
10톤 이상 20톤 미만	11
20톤 이상	13

라. 검체시료의 채취방법

- 1) 임상검사용 시료채취는 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용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육조건, 품종, 개체의 크기, 신청수량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임상검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수량을 채취할 수 있다. 다만, 패류 및 갑각류는 임상검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료를 다르게 채취할 수 있다.
- 2) 정밀검사용 시료채취는 1)의 시료채취 수량에서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우선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어종과 고가의 어종인 경우 정밀검사에 지장이 없는 최소의 수량을 채취할 수 있다.

마. 채취시료의 운반

정밀검사용 시료는 살아있는 상태 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장기 등을 적출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한 후 신속히 운반하여야 한다.

3.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산동물전염병 항목 및 기준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명(학명)	판정기준	비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1. 유행성조혈기괴사증 (Epidemic haematopoietic necrosis, EHN)	Epizootic haematopoietic necrosis virus(EHNV)	<i>Perca fluviatilis</i>	음성	Redfin perch	농어과		
		<i>Oncorhynchus mykiss</i>	음성	Rainbow trout	무지개송어		
		<i>Macquaria australasica</i>	음성	Macquarie perch	백퀴리농어		
		<i>Bidyanus bidyanus</i>	음성	Silver perch	은농어		
		<i>Gambusia affinis</i>	음성	Mosquito fish	모스어		
		<i>Galaxias olidus</i>	음성	Mountain galaxias			
		<i>Maccullochella peelii</i>	음성	Murray cod	머레이대구		
		<i>Salmo salar</i>	음성	Atlantic salmon	대서양연어		
		2. 잉어볼바이러스병 (Spring viraemia of carp, SVC)	Spring viraemia of carp virus(SVCV)	<i>Cyprinus carpio</i>	음성	Common carp	잉어, 향어, 비단잉어
				<i>Ctenopharyngodon idella</i>	음성	Grass carp, white amur	초어
<i>Hypophthalmichthys molitrix</i>	음성			Silver carp	백련어(은색잉어)		
<i>Hypophthalmichthys nobilis</i>	음성			Bighead carp	대두어(큰머리잉어)		
<i>Carassius carassius</i>	음성			Crucian carp	붕어		
<i>Carassius auratus</i>	음성			Goldfish	금붕어		
<i>Tinca tinca</i>	음성			Tench	유럽산잉어		
<i>Silurus glanis</i>	음성			Sheatfish, European catfish, wels	유럽산메기		
<i>Leuciscus idus</i>	음성			Orfe	금빛황어		
<i>Rutilus rutilus</i>	음성			Roach	유럽산잉어		
<i>Danio rerio</i>	음성			Zebrafish	제브라피쉬		
<i>Esox lucius</i>	음성			Northern pike	북부민물꼬치고기		
<i>Poecilia reticulata</i>	음성			Guppy	구피		
<i>Lepomis gibbosus</i>	음성			Pumpkinseed	펌프킨시드(북미산 작은담수어)		
<i>Oncorhynchus mykiss</i>	음성			Rainbow trout	무지개송어		
3.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HS)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irus(VHSV)			<i>Oncorhynchus spp.</i>	음성	Pacific salmon	태평양산연어
				<i>Oncorhynchus mykiss</i>	음성	Rainbow trout	무지개송어
		<i>Gadus macrocephalus</i>	음성	Pacific cod	태평양산대구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명 (학명)	판정기준	비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3. 바이러스성출혈성 패혈증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HS)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irus(VHSV)	<i>Aulorhynchus flavidus</i>	음성	Tubesnout	실바늘치 일종
		<i>Cymatogaster aggregata</i>	음성	Shiner perch	망상어
		<i>Ammodytes hexapterus</i>	음성	Pacific sandlance	까나리
		<i>Merluccius productus</i>	음성	Pacific hake	
		<i>Theragra chalcogramma</i>	음성	Walleye pollock	명태
		<i>Microgadus proximus</i>	음성	Tomcod	대구과
		<i>Gasterosteus aculeatus</i>	음성	Threespined stickleback	큰가시고기
		<i>Sardinops sagax</i>	음성	Pilchard	정어리류
		<i>Anoplopoma fimbria</i>	음성	Black cod	은대구
		<i>Parophrys vetulus</i>	음성	English sole	참가자미
		<i>Thaleichthys pacificus</i>	음성	Eulachon	
		<i>Scomber japonicus</i>	음성	Chub mackerel	고등어
		<i>Hypomesus pretiosus</i>	음성	Surf smelt	날뺑어
		<i>Reinhardtius hippoglossoides</i>	음성	Greenland halibut	검정가자미
		<i>Fundulus heteroclitus</i>	음성	Mummichog	
		<i>Paralichthys olivaceus</i>	음성	Olive flounder	넙치
		<i>Ammodytes personatus</i>	음성	Pacific eel	
		<i>Gadus morhua</i>	음성	Cod	대서양대구
		<i>Melanogrammus aeglefinus</i>	음성	Haddock	북대서양산대구
		<i>Clupea spp.</i>	음성	Herring	청어
		<i>Sprattus sprattus</i>	음성	Sprat	청어속
		<i>Enchelyopus cimbrius</i>	음성	Fourbeard rockling	
		<i>Trisopterus esmarkii</i>	음성	Norway pout	노르웨이베도라 치
		<i>Merlangius merlangus</i>	음성	Whiting	민대구
		<i>Micromesistius poutassou</i>	음성	Blue whiting	청보리멸
		<i>Argentina sphyraena</i>	음성	Lesser argentine	
		<i>Trisopterus minutus</i>	음성	Poor cod	
		<i>Pleuronectes platessa</i>	음성	Plaice	가자미
		<i>Limanda limanda</i>	음성	Dab	각시가자미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명 (학명)	판정기준	비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3. 바이러스성출혈성 패혈증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HS)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irus(VHSV)	<i>Platichthys flesus</i>	음성	Flounder	넙치
		<i>Pomatoschistus minutus</i>	음성	Sand goby	
		<i>Ammodytes spp.</i>	음성	Sand eel	까나리
		<i>Psetta maxima</i>	음성	Turbot	터봇
		<i>Salmo salar</i>	음성	Atlantic salmon	대서양연어
		<i>Sebastes inermis</i>	음성	Rockfish	볼락
		<i>Salmo trutta</i>	음성	Brown trout	브라운송어
		<i>Esox lucius</i>	음성	Pike	
		<i>Thymallus thymallus</i>	음성	Grayling	삼기 (연어과어류)
		<i>Coregonus spp.</i>	음성	Whitefish	흰연어
		<i>Anguilla anguilla</i>	음성	European eel	유럽산뱀장어
		<i>Micropterus salmoides</i>	음성	Largemouth bass	농어
		<i>Salvelinus fontinalis</i>	음성	Brook trout	민물송어
		<i>Oncorhynchus aguabonita</i>	음성	Golden trout	금빛송어
		<i>Dicentrarchus labrax</i>	음성	European sea bass	유럽산농어
		<i>Salvelinus namaycush</i>	음성	Lake trout	송어의 일종
		<i>Hippoglossus hippoglossus</i>	음성	Atlantic halibut	대서양할리벗
		<i>Acanthopagrus schlegelii</i>	음성	Black sea bream, black porgy	감성돔
		<i>Epinephelus akaara</i>	음성	Red spotted grouper	붉바리
		<i>Sebastes schlegelii</i>	음성	Rockfish	조피볼락
		<i>Pagrus major</i>	음성	Red sea bream	참돔
		<i>Seriola quinqueradiata</i>	음성	Japanese amberjack	방어
		<i>Oncorhynchus tshawytscha</i>	음성	Chinook salmon	
		<i>Oncorhynchus kisutch</i>	음성	Coho salmon	은연어
		<i>Oncorhynchus keta</i>	음성	Chum salmon	
		<i>Oncorhynchus nerka</i>	음성	Sockeye salmon	
		<i>Coregonus lavaretus</i>	음성	Whitefish	
		<i>Coregonus clupeaformis</i>	음성	Lake whitefish	
		<i>Esox masquinongy</i>	음성	Muskellunge	
		<i>Clupea harengus</i>	음성	Atlantic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 (학명)	판정 기준	비 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3.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HS)	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irus (VHSV)			herring	
		<i>Clupea pallasii</i>	음성	Pacific herring	
		<i>Dorosoma cepedianum</i>	음성	American gizzard shad	
		<i>Lota lota</i>	음성	Burbot	
		<i>Pleuronectes yokohamae</i>	음성	Marbled flounder	
		<i>Hippoglossus hippoglossus</i>	음성	Atlantic halibut	
		<i>Solea senegalensis</i>	음성	Senegalese sole	
		<i>Ictalurus nebulosus</i>	음성	Brown bullhead	
		<i>Ictalurus punctatus</i>	음성	Channel catfish	
		<i>Neogobius melanostomus</i>	음성	Round goby	
		<i>Micropterus dolomieu</i>	음성	Smallmouth bass	
		<i>Lepomis macrochirus</i>	음성	Bluegill	
		<i>Pomoxis nigromaculatus</i>	음성	Black crappie	
		<i>Ambloplites rupestris</i>	음성	Rock bass	
		<i>Lepomis gibbosus</i>	음성	Pumpkinseed	
		<i>Aplodinotus grunniens</i>	음성	Freshwater drum	
		<i>Perca flavescens</i>	음성	Yellow perch	
		<i>Sander vitreus</i>	음성	Walleye	
		<i>Morone chrysops</i>	음성	White bass	
		<i>Morone saxatilis</i>	음성	Striped bass	
		<i>Morone americana</i>	음성	White perch	
		<i>Sparus aurata</i>	음성	Gilthead seabream	
		<i>Moxostoma anisurum</i>	음성	Silver redbreast	
		<i>Moxostoma macrolepidotum</i>	음성	Shorthead redbreast	
		<i>Pimephales notatus</i>	음성	Bluntnose minnow	
		<i>Notropis atherinoides</i>	음성	Emerald shiner	
<i>Notropis hudsonius</i>	음성	Spottail shiner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 (학명)	판정 기준	비 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i>Chondrostoma polylepis</i>	음성	Iberian nase			
		<i>Danio rerio</i>	음성	Zebra danio			
		<i>Percopsis omiscomaycus</i>	음성	Troutperch			
		<i>Lampetra fluviatilis</i>	음성	European river lamprey			
		<i>Onos mustelus</i>	음성	Rockling			
		4. 전염성 연어 빈혈증 (Infectious salmon anaemia, ISA)	Infectious salmon anaemia virus (ISAV)	<i>Salmo salar</i>	음성	Atlantic salmon	대서양연어
				<i>Salmo trutta</i>	음성	Brown trout	브라운송어
				<i>Oncorhynchus mykiss</i>	음성	Rainbow trout	무지개송어
				<i>Pollachius virens</i>	음성	Pollock	북대서양대구
				<i>Gadus morhua</i>	음성	Atlantic Cod	대서양대구
<i>Salvelinus alpinus</i>	음성			Charr	북극곤들메기		
<i>Clupea harengus</i>	음성			Herring	청어		
<i>Oncorhynchus kisutch</i>	음성			Coho salmon	은연어		
<i>Pagrus major</i>	음성			Red sea bream	참돔		
<i>Evynnis japonica</i>	음성			Crimson sea bream	붉돔		
		<i>Acanthopagrus schlegelii</i>	음성	Black sea bream, black porgy	검성돔		
		<i>Lateolabrax sp.</i>	음성	Sea bass	농어		
		<i>Lates calcarifer</i>	음성	Sea bass	농어		
		<i>Seriola quinqueradiata</i>	음성	Japanese amberjack	방어		
		<i>Seriola dumerili</i>	음성	Greater amberjack	켓방어		
		<i>Pseudocaranx dentex</i>	음성	Striped jack	흑점줄전갱이		
		<i>Trachurus japonicus</i>	음성	Japanese jack mackerel	전갱이		
		<i>Trachinotus blochii</i>	음성	Snubnose pompano			
		<i>Thunnus thynnus</i>	음성	Blue fin tuna	참다랑어		
		<i>Oplegnathus fasciatus</i>	음성	Japanese parrotfish	돌돔		
		<i>Oplegnathus punctatus</i>	음성	Spotted parrotfish	강담돔		
		<i>Girella punctata</i>	음성	Largescale blackfish	뱅에돔		
		<i>Paralichthys olivaceus</i>	음성	Olive flounder	넙치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 (학명)	판정 기준	비 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5. 광둥이리도바이러스 병 (Red sea bream iridoviral disease, RSIV) and necrosis virus (ISKNV)	Red sea bream iridovirus (RSIV), Infectious spleen and kidney necrosis virus (ISKNV)	<i>Takifugu rubripes</i>	음성	Tiger puffer	자주복
		<i>Siniperca chuatsi</i>	음성	Chinese perch	
		<i>Sciaenops ocellatus</i>	음성	Red drum	홍민어
		<i>Mugil cephalus</i>	음성	Mullet	송어
		<i>Epinephelus</i> spp.	음성	Groupers	
		<i>Seriola lalandi</i> × <i>Seriola quinqueradiata</i>	음성	Yellowtail amberjack and Japanese amberjack Hybrid	교잡종
		<i>Scomberomorus niphonius</i>	음성	J a p a n e s e Spanish mackerel	삼치
		<i>Scomber japonicus</i>	음성	Chub mackerel	고등어
		<i>Rachycentron canadum</i>	음성	Cobia	날새기
		<i>Parapristipoma trilineatum</i>	음성	Chicken grunt	뽕자리
		<i>Plectorhinchus cinctus</i>	음성	Crescent sweetlips	어름돔
		<i>Lethrinus haematopterus</i>	음성	C h i n e s e emperor	갈돔과 어류
		<i>Lethrinus nebulosus</i>	음성	Spangled emperor	
		<i>Larimichthys crocea</i>	음성	C r o c e i n e croaker	부세
		<i>Lateolabrax japonicus</i>	음성	Japanese sea perch	일본산 돔어
		<i>Morone saxatilis</i> × <i>Morone chrysops</i>	음성	Striped sea bass and white bass hybrid	
		<i>Micropterus salmoides</i>	음성	Largemouth bass	큰입베스
		<i>Verasper variegatus</i>	음성	Spotted halibut	범가자미
		<i>Acanthopagrus latus</i>	음성	Yellowfin sea bream	새눈치
		<i>Seriola lalandi</i>	음성	Yellowtail amberjack	방어
		<i>Sebastes schlegelii</i>	음성	Rockfish	조피볼락
		<i>Epinephelus akaara</i>	음성	Red spotted grouper Hong Kong grouper	
		<i>Epinephelus septemfasciatus</i>	음성	S e v e n b a n d grouper C o n v i c t grouper	
		<i>Epinephelus malabaricus</i>	음성	Brown spotted grouper M a l a b a r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 (학명)	판정 기준	비 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grouper			
		<i>Epinephelus bruneus</i>	음성	L o n g t o o t h grouper			
		<i>Epinephelus coioides</i>	음성	Orangespotted grouper			
		<i>Epinephelus awoara</i>	음성	Yellow grouper			
		<i>Epinephelus tauvina</i>	음성	G r e a s y grouper			
		<i>Epinephelus fuscoguttatus</i>	음성	Black spotted grouper			
				Brown marbled grouper			
		<i>Epinephelus lanceolatus</i>	음성	Giant grouper			
		6. 잉어허피스바이러스 병 (Koi herpesvirus disease, KHD)	K o i herpesvirus (KHV)	<i>Cyprinus carpio</i>	음성	Common carp	잉어, 향어, 비 단잉어
				<i>Cyprinus carpio</i> × <i>Carassius auratus</i>	음성	Common carp hybrids	교잡종
<i>Cyprinus carpio</i> × <i>Carassius carassius</i>	음성			Common carp hybrids	교잡종		
<i>Carassius carassius</i> × <i>Cyprinus carpio</i>	음성			Common carp hybrids	교잡종		
7. 유행성폐양중후군 (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EUS)	<i>Aphanomyces piscicida</i> <i>Aphanomyces invadans</i>	<i>Acanthopagrus australis</i>	음성	Yellowfish seabream			
		<i>Anabas testudineus</i>	음성	Climbing perch			
		Anguillidae	음성	Eels	뱀장어과		
		Bagridae	음성	B a g r i d catfishes			
		<i>Bidyanus bidyanus</i>	음성	Silver perch			
		<i>Brevoortia tyrannus</i>	음성	Atlantic menhaden			
		<i>Caranx</i> spp.	음성	Jacks	전갱이류		
		<i>Gibelion catla</i>	음성	Catla	카틀라잉어		
		<i>Channa striata</i>	음성	Striped snakehead			
		<i>Cirrhinus cirrhosus</i>	음성	Mrigal			
		<i>Clarias batrachus</i>	음성	W a l k i n g catfish	동남아산 알미 노메기		
		<i>Clarias</i> spp.	음성	Torpedoshaped catfishes			
		<i>Colisa lalia</i>	음성	Dwarf gourami	드와프 구라미		
		<i>Esomus</i> sp.	음성	Flying barb	플리잉바브		
		Exocoetidae	음성	H a l f b e a k s flying fishes	날치과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명 (학명)	판정기준	비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7.유행성궤양증후군 (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EUS)	<i>Aphanomyces piscicida</i> <i>Aphanomyces invadans</i>	<i>Monopterus albus</i>	음성	Swamp eel	드렁허리
		<i>Glossogobius giuris</i>	음성	Bareyed goby	
		<i>Oxyleotris marmorata</i>	음성	Marble goby	마블고비
		Gobiidae	음성	Gobies	망둥어과
		<i>Labeo rohita</i>	음성	Rohu (Indian carp)	로후
		Labeo spp.	음성	Rhinofishes	물각쥐치
		<i>Lates calcarifer</i>	음성	Barramundi, Seabass	바라문디
		<i>Mugil cephalus</i>	음성	Grey mullet, Striped mullet	숭어
		Mugil spp.	음성	Mulletts [Mugilidae]	숭어
		Liza spp.	음성	Mulletts [Mugilidae]	숭어
		<i>Plecoglossus altivelis</i>	음성	Ayu	은어
		<i>Puntius sophore</i>	음성	Pool barb	
		<i>Scortum barcoo</i>	음성	Barcoo grunter	벤자리
		Siluridae	음성	Catfishes, wells	메기과
		<i>Sillago ciliata</i>	음성	Sand whiting	
		<i>Toxotes chatareus</i>	음성	Common archer fish	물총고기
		<i>Barbonymus gonionotus</i>	음성	Silver barb	실버바브
		<i>Scatophagus argus</i>	음성	Spotted scat	점나비돔
		<i>Osphronemus goramy</i>	음성	Giant gourami	구라미
		<i>Platycephalus fuscus</i>	음성	Dusky flathead	
		Psettodes sp.	음성	Spiny turbot	마찰넙치
		<i>Rhodeus ocellatus</i>	음성	Tairikubaratango	원돌납줄개
		Rohtee sp.	음성	Keti	Bangladesh
		<i>Scardinius erythrophthalmus</i>	음성	Rudd	러드 (유럽산 잉어과민물고기)
		Terapon sp.	음성	Terapon	벤자리과
		<i>Trichogaster pectoralis</i>	음성	Snakeskin gourami	구라미
		<i>Trichogaster trichopterus</i>	음성	Threespot gourami	구라미
		<i>Acanthopagrus berda</i>	음성	Black bream	
		<i>Ambassis agassizii</i>	음성	Chanda perch, Agassiz's olive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명 (학명)	판정기준	비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7.유행성궤양증후군 (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EUS)	<i>Aphanomyces piscicida</i> <i>Aphanomyces invadans</i>			grassfish	
		<i>Ameiurus melas</i>	음성	Black bullhead	
		<i>Amniataba percooides</i>	음성	Striped grunter, Barred grunter	
		Arius sp.	음성	Forktailed catfish	
		<i>Aseraggodes macleayanus</i>	음성	Narrow banded sole	
		<i>Barbus paludinosus</i>	음성	Straightfin barb	
		<i>Barbus poechii</i>	음성	Dashtail barb	
		<i>Barbus thamalakanensis</i>	음성	Thamalakane barb	
		<i>Barbus unitaeniatus</i>	음성	Longbeard barb, Slender barb	
		<i>Brycinus lateralis</i>	음성	Stripped robber	
		<i>Clarias gariepinus</i>	음성	Sharptooth african catfish	
		<i>Clarias ngamensis</i>	음성	Blunttoothed african catfish	
		<i>Glossamia aprion</i>	음성	Mouth almighty	
		<i>Glossogobius</i> sp.	음성	Goby	
		<i>Hepsetus odoe</i>	음성	African pike	
		<i>Hydrocynus vittatus</i>	음성	Tigerfish	
		<i>Ictalurus punctatus</i>	음성	Channel catfish	
		<i>Kurtus gulliveri</i>	음성	Nursery fish	
		<i>Labeo cylindricus</i>	음성	Redeye labeo	
		<i>Labeo lunatus</i>	음성	Upper Zambezi labeo	
		<i>Leiopotherapon unicolor</i>	음성	Spangled perch	
		<i>Lepomis macrochirus</i>	음성	Bluegill	
		<i>Lutjanus argentimaculatus</i>	음성	Mangrove jack	
		<i>Marcusenius macrolepidotus</i>	음성	Bulldog	
		<i>Melanotaenia splendida</i>	음성	Rainbow fish	
		<i>Micrallestes acutidens</i>	음성	Silver robber	
		<i>Nematalosa erebi</i>	음성	Bony bream	
		<i>Oreochromis andersonii</i>	음성	Threespotted tilapia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명 (학명)	판정기준	비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7. 유행성폐양증후군 (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EUS)	Aphanomyces piscicida Aphanomyces invadans	<i>Oreochromis macrochir</i>	음성	Green head tilapia, Longfin tilapia			
		<i>Oxyeleotris lineolatus</i>	음성	Sleepy cod			
		<i>Petrocephalus catostoma</i>	음성	Churchill			
		<i>Sargochromis carlottae</i>	음성	Rainbow bream			
		<i>Sargochromis codringtonii</i>	음성	Green bream			
		<i>Sargochromis giardi</i>	음성	Pink bream			
		<i>Schilbe intermedius</i>	음성	Silver catfish			
		<i>Schilbe mystus</i>	음성	African butter catfish			
		<i>Scleropages jardinii</i>	음성	Saratoga			
		<i>Selenotoca multifasciata</i>	음성	Striped scat			
		<i>Serranochromis angusticeps</i>	음성	Thin face largemouth			
		<i>Serranochromis robustus</i>	음성	Nembwe			
		<i>Strongylura krefftii</i>	음성	Long tom			
		<i>Tilapia rendalli</i>	음성	Red breast tilapia			
		<i>Tilapia sparrmanii</i>	음성	Banded tilapia			
		<i>Toxotes lorentzi</i>	음성	Primitive archer fish			
		8. 자이로닥틸루스증 (Gyrodactylosis)	<i>Gyrodactylus salaris</i>	<i>Salmo salar</i>	음성	Atlantic salmon	대서양연어
1. <i>Oncorhynchus mykiss</i>	음성			2. Rainbow trout	무지개송어		
3. <i>Salvelinus alpinus</i>	음성			4. Charr	북극곤돌메기		
5. <i>Salvelinus fontinalis</i>	음성			6. North American brook trout	북미산 브루크 송어		
7. <i>Thymallus thymallus</i>	음성			8. Grayling	사루기		
9. <i>Salvelinus namaycush</i>	음성			10. Lake trout	송어의 일종		
11. <i>Salmo trutta</i>	음성			12. Brown trout	브라운송어		
9.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Viral nervous necrosis, VNN)	Viral nervous necrosis virus			<i>Lates calcarifer</i>	음성	Asian seabass	
				<i>Dicentrarchus labrax</i>	음성	European seabass	유럽산농어
				<i>Epinephelus akaara</i>	음성	Red spotted grouper	붉바리
				<i>Epinephelus coioides</i>	음성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명 (학명)	판정기준	비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9.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Viral nervous necrosis, VNN)	Viral nervous necrosis virus	<i>Epinephelus fuscoguttatus</i>	음성	Blackspotted grouper	
		<i>Epinephelus malabaricus</i>	음성	Brown spotted grouper	
		<i>Epinephelus bruneus</i>	음성	Kelp grouper	자바리
		<i>Epinephelus septemfasciatus</i>	음성	Sevenband grouper	능성어
		<i>Epinephelus tauvina</i>	음성		
		<i>Pseudocaranx dentex</i>	음성	Striped jack	흑점줄전갱이
		<i>Oplegnathus fasciatus</i>	음성	Japanese parrotfish	돌돔
		<i>Verasper moseri</i>	음성	Barfin flounder	
		<i>Hippoglossus hippoglossus</i>	음성	Atlantic halibut	대서양할리벳
		<i>Paralichthys olivaceus</i>	음성	Olive flounder	넙치
		<i>Psetta maxima</i>	음성	Turbot	터봇
		<i>Takifugu rubripes</i>	음성	Tiger puffer	차주복
		<i>Gadus macrocephalus</i>	음성		대구
		<i>Platycephalus indicus</i>	음성		양태
		<i>Lateolabrax japonicus</i>	음성		농어
		<i>Cromileptes altivelis</i>	음성	Panther Grouper	
		<i>Epinephelus awoara</i>	음성		도도바리
		<i>Seriola dumerili</i>	음성		젯방어
		<i>Atractoscion nobilis</i>	음성	White sea bass, White weakfish	대서양연어
		<i>Umbrina cirrosa</i>	음성		Shi drum
<i>Oplegnathus punctatus</i>	음성		강담돔		
<i>Pseudopleuronectes herzensteini</i>	음성	little mouth flounder	참가자미		
10. 전염성췌장괴사증 (Infectious pancreatic necrosis, IPN)	Infectious pancreatic necrosis virus(IPNV)	<i>Oncorhynchus mykiss</i>	음성	Rainbow trout	무지개송어
		<i>Salvelinus fontinalis</i>	음성	Brook trout	브루크송어
		<i>Salmo trutta</i>	음성	Brown trout	브라운송어
		<i>Salmo salar</i>	음성	Atlantic salmon	대서양연어
		<i>Oncorhynchus spp.</i>	음성	Pacific salmon	태평양산연어
		<i>Seriola quinqueradiata</i>	음성	Yellowtail	방어
		<i>Psetta maxima</i>	음성	Turbot	터봇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 (학명)	판정 기준	비 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10. 전염성췌장괴사 증 (Infectious pancreatic necrosis, IPN)	Infectious pancreatic necrosis virus(IPNV)	<i>Limanda limanda</i>	음성	Dab	가자미류
		<i>Hippoglossus hippoglossus</i>	음성	Halibut	할리부트
		<i>Gadus morhua</i>	음성	Atlantic cod	대서양대구
		<i>Esox lucius</i>	음성	Northern pike	
		Anguillidae	음성		뱀장어과
		Atherinidae	음성		색줄멸과
		Bothidae	음성		동글넙치과
		Carangidae	음성		전갱이과
		Catostomidae	음성		
		Cichlidae	음성		시크리드과
		Clupeidae	음성		청어과
		Cobitidae	음성		미꾸리과
		Coregonidae	음성		극지송어과
		Cyprinidae	음성		잉어과
		Esocidae	음성		꼬치고기과
		Moronidae	음성		
		Paralichthyidae	음성		
		Percidae	음성		
		Poeciliidae	음성		
		Sciaenidae	음성		민어과
Soleidae	음성		납서대구과		
Thymallidae	음성		사루기과		
11. 돌돔이리도바이 러스병(Rockbre am iridoviral disease : RBIVD)	Rockbre am iridovirus(RBIV)	<i>Oplegnathus fasciatus</i>	음성	Rock bream	돌돔
12. 보나미아 오스트 레 감염 (Infection with <i>Bonamia ostreae</i> )	<i>Bonamia ostreae</i>	<i>Ostrea edulis</i>	음성	European flat oyster	유럽산넙적굴
		<i>Ostrea angasi</i>	음성	Australian mud oyster	호주산굴
		<i>Ostrea denselamellosa</i>	음성	Asiatic oyster	벗굴
		<i>Ostrea puelchana</i>	음성	Argentinean flat oyster	아르헨티나산 넙적굴
		<i>Ostrea chilensis</i>	음성	Chilean flat oyster	칠레산 넙적굴
		<i>Ostrea lutaria</i>	음성	New zeland oyster	뉴질랜드산굴
		<i>Crassostrea ariakensis</i>	음성	S u m i n o e oyster	갯굴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 (학명)	판정 기준	비 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13. 보나미아 오사 (Infection with <i>Bonamia exitiosa</i> )	<i>Bonamia exitiosa</i>	<i>Ostrea chilensis</i>	음성	Chilean flat oyster	칠레산 넙적굴		
		<i>Ostrea lutaria</i>	음성	New zeland oyster	뉴질랜드산굴		
		<i>Ostrea angasi</i>	음성	Australian mud oyster	굴		
		<i>Ostrea edulis</i>	음성	European flat oyster			
		<i>Ostrea edulis</i>	음성	European flat oyster	유럽산 넙적굴		
14. 마르테일리아 레프리젠스 감염증 (Infection with <i>Marteilia refringens</i> )	<i>Marteilia refringens</i>	<i>Ostrea angasi</i>	음성	Australian mud oyster	굴		
		<i>Ostrea chilensis</i>	음성	Chilean flat oyster	칠레산 넙적굴		
		<i>Ostrea lutaria</i>	음성	New zeland oyster	뉴질랜드산굴		
		<i>Mytilus edulis</i>	음성	Blue mussel	진주담치		
		<i>Mytilus galloprovincialis</i>	음성	Mediterranean mussel	지중해담치		
		<i>Ostrea puelchana</i>	음성	Argentinean flat oyster	아르헨티나산 넙적굴		
		<i>Ostrea denselamellosa</i>	음성	Asiatic oyster			
		<i>Solen marginatus</i>	음성	Clam			
		<i>Chamelea gallina</i>	음성	Clam			
		15. 페킨수스 마리누스 감염증 (Infection with <i>Perkinsus marinus</i> )	<i>Perkinsus marinus</i>	<i>Crassostrea virginica</i>	음성	Eastern oyster	버지니아참굴
				<i>Crassostrea gigas</i>	음성	Pacific oyster	참굴
<i>Crassostrea ariakensis</i>	음성			S u m i n o e oyster	갯굴		
<i>Mya arenaria</i>	음성			Soft shell clam	우럭		
<i>Macoma balthica</i>	음성			Baltic clam			
<i>Mercenaria mercenaria</i>	음성			Hard shell clam			
<i>Crassostrea rhizophorae</i>	음성			M a n g r o v e oyster			
<i>Crassostrea corteziensis</i>	음성			Cortez oyster			
16.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 (Infection with <i>Xenohaliotis californiensis</i> )	<i>Xenohaliotis californiensis</i>			<i>Haliotis rufescens</i>	음성	Red abalone	전복
				<i>Haliotis cracherodii</i>	음성	Black abalone	전복
		<i>Haliotis sorenseni</i>	음성	White abalone	전복		
		<i>Haliotis corrugata</i>	음성	Pink abalone	전복		
		<i>Haliotis fulgens</i>	음성	Green abalone	그린전복		
		<i>Haliotis tuberculata</i>	음성	Tube abalone	통전복		
		<i>Haliotis walallensis</i>	음성	Flat abalone	전복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 (학명)	판정 기준	비 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i>Haliotis discus-hannai</i>	음성	Japanese abalone	전복
		<i>Haliotis diversicolor</i>	음성	Small abalone	오분자기
		Genus <i>Haliotis</i>	음성		Haliotis 속
17. 전복바이러스성 폐사증 (Abalone viral mortality)	Abalone spherical virus	<i>Haliotis discus-hannai</i>	음성	Japanese abalone	전복
		<i>Haliotis diversicolor</i>	음성	Small abalone	오분자기
		<i>Haliotis laevigata</i>	음성	Greenlip abalone	전복
		<i>Haliotis rubra</i>	음성	Blacklip abalone	전복
		Turbo sp.	음성	Turban shell	소라류
		<i>Tegula rusticum</i>	음성	Tegula	
		<i>Mytilus edulis</i>	음성	Blue mussel	진주담치
		<i>Haliotis laevigata</i> × <i>Haliotis rubra</i>	음성	Abalone hybrids	교잡종
18. 가재전염병 (Crayfish plague)	<i>Aphanomyces astaci</i>	Freshwater crayfish	음성	Freshwater crayfish	담수산 가재류
		<i>Eriocheir sinensis</i>	음성	Chinese mitten crab	참게
		Cambaridae	음성		
		Astacidae	음성		
		Parastacidae	음성		
19. 구상마콜로바이러스증 (Spherical baculovirus)	<i>Penaeus monodon</i> baculovirus (MBV)	Genus <i>Penaeus</i>	음성		<i>Penaeus</i> 속
		Genus <i>Metapenaeus</i>	음성		<i>Metapenaeus</i> 속
		Genus <i>Fenneropenaeus</i>	음성		<i>Fenneropenaeus</i> 속
		Genus <i>Melicertus</i>	음성		<i>Melicertus</i> 속
20. 사면마콜로바이러스증 (Tetrahedral baculovirus)	<i>Baculovirus penaei</i> (BP)	Genus <i>Penaeus</i>	음성		<i>Penaeus</i> 속
		Genus <i>Trachypenaeus</i>	음성		<i>Trachypenaeus</i> 속
		Genus <i>Protrachypene</i>	음성		<i>Protrachypene</i> 속
21. 전염성피하및조직괴사증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IHNV)	Infectious hypodermal and haematopoietic necrosis virus (IHNV)	Genus <i>Penaeus</i>	음성		<i>Penaeus</i> 속
		Genus <i>Trachypenaeus</i>	음성		<i>Trachypenaeus</i> 속
		Genus <i>Protrachypene</i>	음성		<i>Protrachypene</i> 속
22. 노랑머리병 (Yellow head disease, YHD)	Yellow head virus (YHV)	<i>Penaeus monodon</i>	음성	Giant prawn	tiger 열록새우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 (학명)	판정 기준	비 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i>Litopenaeus stylirostris</i>	음성	Pacific blue prawn	
		<i>Litopenaeus setiferus</i>	음성	White prawn	인도백새우
		<i>Farfantepenaeus aztecus</i>	음성	Brown prawn	
		<i>Farfantepenaeus duorarum</i>	음성	Pink prawn	
		<i>Marsupenaeus japonicus</i>	음성	Kuruma prawn	보리새우
		<i>Penaeus esculentus</i>	음성	Brown tiger prawn	
		<i>Fenneropenaeus merguensis</i>	음성	White banana prawn	바나나새우
		<i>Metapenaeus ensis</i>	음성	Red endeavour prawn	
		<i>Metapenaeus bennettiae</i>	음성	Greentail prawn	
		<i>Macrobrachium sintangense</i>	음성	Sunda river prawn	청거미새우
		<i>Exopalaemon styliferus</i>	음성	Mysid shrimp	
		<i>Palaemon serrifer</i>	음성	Barred estuarine shrimp	
		<i>Asctes</i> sp.	음성	Paste prawn	
		<i>Euphausia superba</i>	음성	krill	크릴새우
		<i>Litopenaeus vannamei</i>	음성	Pacific shrimp	white 흰다리새우
23. 흰반점병 (White spot disease, WSD)	White spot disease, (WSSV) spot virus	Crustacea	음성		갑각류
		Bivalves	음성		이매패
24. 타우라증후군 (Taura syndrome)	Taura syndrome virus (TSV)	<i>Litopenaeus vannamei</i>	음성	Pacific shrimp	white 흰다리새우
		<i>Litopenaeus stylirostris</i>	음성	Pacific shrimp	blue
		<i>Litopenaeus setiferus</i>	음성	Gulf shrimp	white
		<i>Penaeus monodon</i>	음성	Giant prawn	tiger 열록새우
		<i>Metapenaeus ensis</i>	음성	Red endeavour prawn	
		<i>Marsupenaeus japonicus</i>	음성	Kuruma prawn	보리새우
		<i>Farfantepenaeus aztecus</i>	음성	Brown prawn	
		<i>Farfantepenaeus duorarum</i>	음성	Pink prawn	대하
		<i>Litopenaeus schmitti</i>	음성	Southern white shrimp	
		<i>Fenneropenaeus chinensis</i>	음성	Chinese white shrimp	대하

전염병항목		지정검역물 (학명)	판정 기준	비 고	
병명	병원체			영명	한글명
25. 전염성근괴사증 (Infectious myonecrosis, IMN)	Infectious myonecrosis virus(IMNV)	<i>Litopenaeus vannamei</i>	음성	Pacific white shrimp	흰다리새우
		<i>Litopenaeus stylirostris</i>	음성	Pacific blue shrimp	청새우
		<i>Penaeus monodon</i>	음성	Giant tiger prawn	얼룩새우
26. 흰 꼬리병 (White tail disease, WTD)	<i>Macrobrachium rosenbergii</i> nodavirus(MrNV)	<i>Macrobrachium rosenbergii</i>	음성	Giant fresh water prawn	큰정거미새우

주) 비고란에 영명, 한글명은 참고사항으로 활용

4.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항목 및 기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기준·규격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밀검사·반송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

접수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보관용, <input type="checkbox"/> 여행지용, <input type="checkbox"/> 검역장소 제출용	
성명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명 (학명)				
수량	C/T, (kg 또는 EA)			
물품관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자사 시행장 관리	시행장명 (지정번호)		
	<input type="checkbox"/> 위탁 시행장 관리	시행장 주소 (전화번호)		
안내문	<p>1. 검역 중 부대비용, 건강관리, 폐사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습니다.</p> <p>2. 검역결과 불합격 시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송하거나 소각 또는 매몰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p>			
<p>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3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역장소로 운송할 여행자 휴대품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수산동물검역관 (인)</p>				



## 수입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2009. 2. 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9-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을 수출국가에서 검역하기 위하여 파견검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국가 파견 검역신청) ①수산동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가 현지에서 검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검역신청서를 당해 지정검역물의 통관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1항의 파견검역을 직접 신청하기가 곤란하여 무역업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이하 “대행인”이라 한다)한 때에는 대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대행인간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별표 검역시설·장비 및 시약을 갖추고 있는 수출국가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용동의서와 동 기관의 사용시설·시약 및 장비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출국가파견검역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지정검역물의 보관시설현황 자료는 시료 채취부터 검역이 완료되어 반출될 때까지 외부영향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파견검역 신청 서류 검토) ①지원장은 수출국가 파견검역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지원장의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검사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파견검역신청서 내용의 타당성
2. 검역기관·검역시설·시약 및 장비 사용의 적정성
3. 검역기간중 수산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의서의 적정성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5. 검역완료 지정검역물에 대한 통제기능 및 관리감독 이행 서약서의 적정성
6. 그밖에 파견기간 중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사항 등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되거나 파견검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또는 파견검역이 불가능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 신청을 보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견검역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파견국가(지역) 및 기간
2. 파견검역관 지명
3. 검역관의 예비산정(공무원여비기준에 따라 산정)
4. 파견 검역기간 중 검역관의 근무요령
5. 정밀검사 기관지정(국내반입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제4조(검역관 파견검역 예비정산) ①검사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을 수출국가에 파견시켜 검역을 실시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한을 정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대행인이 신청한 경우 대행인)
2.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국가의 정부

②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일까지 검역관 여비를 납부한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신청인 또는 대행인에게 파견검역이 불가함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장 잔여기간에 대한 여비를 정산하여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고 전언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출국가의 천재지변, 검역관의 신분상 문제가 발생되어 검사원장이 조기 귀국 조치한 경우
2. 검역관이 검역기간 중 지정검역물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 검사원장에게 보고하고 귀국 지시에 따라 조기 귀국한 경우

제5조(검역신청) ①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검역을 받고자 하는 지정검역물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수산동물전염병 감염을 차단 할 수 있도록 격리된 장소에 별도로 수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식승인서 사본(이식용 수산동물에 한함)
  2. 당해 지정검역물 수용·보관 장소의 위치도 및 관리인 지정 인적사항
- ②검역관은 검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역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검역관은 제1항의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신청인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검역방법) ①검역관은 검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매건 서류검사·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

하는 경우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는 파견국가에서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된 시료는 지체 없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기준 및 판정) ①검역기준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②검역관은 검역결과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전량 합격으로 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전량 불합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검역관은 제2항에 따라 불합격 처리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고 그 결과를 검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합격 물품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검역관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역증명서의 교부) 검역관은 제7조제1항의 검역기준에 적합한 지정검역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역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명서를 신청인 또는 대행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반출이전 지정검역물 관리) ①검역관은 제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가 교부된 지정검역물을 반출 전에 다른 장소로 이동을 제한하는 등 통제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제8조의 지정검역물이 반출 이전에 부득이 다른 장소로 이동 할 경우 사전 검역관에게 신고를 하고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검역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을

위한 선적을 완료하여야 하며 선적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 동물 지정검역물 합격품 반출신청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 기간내에 반출이 곤란하여 신청인 또는 대행인의 사전 신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해서 7일 이내의 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검역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 지정검역물 합격품 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역내용과 현물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검역물의 적재 및 반출을 지시하여야 한다.

⑤검역관은 제4항에 따라 반출을 지시한 때에는 당해 검역물의 국내 반입항구 또는 공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동물 지정검역물 합격품 반출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역의 일부면제) 지원장은 수산동물과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검역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검역관은 귀국한 후 30일 이내에 파견검역 기간 중 수행한 업무를 종합하여 검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개정) 「이식용수산물 수출국가파견검역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동식물”을 “수산식물”로 한다.

[별표]

#### 검역시설·장비 및 시약 기준(제2조제3항 관련)

##### 1. 검역시설

가. 하나의 정부기관에서 수산동물질병 검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공간의 실험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소요 장비명

유전자증폭기(Thermocyclers), 원심분리기(High speed centrifuge), 건열가열판(Heat block), 전기영동장치(Mupid Mini gel system), 진공데시게이터(Vacuum desiccator), 자외선투영장치(U.V. illuminator), 저온배양기(Low temperature incubator), 고압증기멸균기(Autoclave), 가열교반기(Hot stirrer), 건조기(Dry oven),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포매기(Embedding center), 마이크로톰(Rotary microtome), 항온수조(Water bath), 가열판(Hot plate), 광학현미경(Light microscope), 초저온냉동고 (Deep freezer), 냉동고(Freezer), 조직마쇄기, 무균대(Clean bench), 제빙기(Ice maker), 전기식 저시저울(Electronic balance), 폴라로이드카메라(Polaroid camera), 염기서열분석기, 유전자농도측정기, 기타 냉장고 등 실험실 기본 장비

##### 3. 정밀검사 필요시약 및 소모품

사용시약 및 각종 소모품은 정밀검역을 하는데 충분한 수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09. 2. 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9-3호

개정 2009. 10. 2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9-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6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09.10.21>

제3조(검역장소 지정대상) 검역장소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09.10.21]

제4조(검역장소 지정 시설기준) 검역장소의 지정을 위한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1>

제5조(검역장소 지정신청) ①검역장소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선임(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 신청서를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수산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현장에 보내어 시설기준, 검역관리인 선임 및 시설여건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의2(해상가두리 양식시설 지정 절차) ①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검역장소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검역관리인을 선임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정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수산물과학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한 수산동물전염병이 인근 수산동물 양식시설에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지원장은 제1항제1호 검토결과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국립수산물과학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한 수산동물 전염병이 인근 수산동물 양식시설에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반입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 검역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09.10.21]

제6조(검역장소의 지정서 발급 등) ①지원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 2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검역관리인에게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1>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장소 지정내용 변경 신청 등) ①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 신청서를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2. 검역관리인

3. 지정 면적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증빙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③지원장은 검역관리인의 변경신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검역관리인에게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원장은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때에는 검역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역기간 중 검역물의 관리 등) 제6조에 따라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역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용 시료채취 업무 협조
2. 검역장소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청결유지와 소독 등 필요한 조치
3. 검역장소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을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
4. 수산동물 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검역장소의 시설 및 지정 검역물 관리
5. 검역장소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결과 통보시까지 별지 서식의 수산동물 검역표를 선화증권(B/L)단위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
6. 검역이 종료되지 아니한 수출입 수산동물 지정검역물의 유출 통제

제9조(검역장소 사후관리) ①지원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보수기한을 제시하도록 하고 동 기간 내 보수가 완료될 것을 서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완료 기간

까지는 동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2009-6호, 2009.10.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검역장소 시설기준(제4조 관련)<개정 2009.10.21>**

1. 조류(鳥類)의 침입이나 배설물, 빗물 등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수식 또는 이식용으로서 고도회유성어종 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1>
2. 검역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설치류, 갑각류 등의 유입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9.10.21>
3. 출입자의 통제가 쉽도록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청소 및 소독 등으로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수조는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 불 침투성 재질로 청소 및 소독이 쉽게 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6. 검역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물이 다른 수조의 물과 교차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국내 승인된 양식생물용 소독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8. 검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실험대, 해부기, 현미경(40배, 100배, 200배)등 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지 서식]

수산동물 검역표

품 명		학 명	
수량(kg)		마 리 수	
입 항 일		입 고 일	
검역신청일			
신청번호			
선 명			
선화증권 NO			
화 주 명			
수 출 국			
검역사항			
비 고	검역관리인 : (서명)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기관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12. 30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08-1호

개정 2009. 5. 18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09-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함은 병성감정 실시 대상 수산동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지조사 및 평가)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표의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수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변경)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교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변경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변경신청서의 서류검토,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교부하거나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병성감정실시기관 교육 및 감독)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민간연구소인 경우 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병성감정보조원(이하 “병성감정업무담당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질병진단 등에 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방역에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 수시로 방역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효율적인 병성감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병성감정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국가 방역 상 필요한 경우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으로 하여금 수산동물병성감정 접수경위, 수산동물전염병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진단액·검사재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에게 병성감정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병성감정 관련 지원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 구비요건(제3조 관련)

#### 1. 인력구성

구분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총 3인 이상 이여야 하며 최소 1인은 수산동물질병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일 것을 권장한다. 1. 병성감정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2. 병성감정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해양)생명의학·어병학·양식학·수산생물학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
병성감정보조원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임상병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균배양 등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보조원으로 둘 것을 권장 한다

#### 2. 시설

가. 시설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나. 권장시설

시 설	규격	비 고
해부임상검사실	1실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소독기구)를 구비하고 외형적 이상을 검사·면담하는 곳으로 해부장비(해부기구), 현미경 및 면담일지 등을 갖추어야 함
사체 처리실	1실	소각 또는 소각시설 및 사체처리기를 구비하거나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병성감정 전용 실험실	1실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실험실로 무균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곳으로 진료실(병성감정필수기자재를 구비)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3. 실험기자재

#### 가. 필수기자재

장비명	수량 (대)	권장 규격
유전자증폭기 (DNA amplification system))	1	Ramping speed: Up to 3°C/sec Thermal Range: -5°C to 105°C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 sopectrophotometer)	1	파장범위: 190~900 nm 파장정밀도: ±1 nm 파장재현성: ± -0.5
탁상형 원심분리기 (Benchtop centrifuge)	1	최대회전속도: 13200 rpm 온도조절범위: 상온
탁상형 냉장원심분리기 (Refrigerated benchtop centrifuge)	1	최대회전속도: 18,000 rpm 온도조절범위: -20 ~ 40°C 1.5/2.2*48본(ANGLEROTOR)
가열기 (Block heater)	1	24×1.5 m×3 block 상온~150°C
전기영동장치 (Agarose gel electrophoresis)	1	Agarose gel 240×126×19 mm 수평형, Power supply 포함
겔분석시스템 (Gel document system) 또는 자외선 작업함(UV illuminator)	1	해상도(Pixel): 1392 × 1040 or 1688 × 1248 or 2048×2048 이미지촬영속도: 20~30 FPS UV illuminator 및 폴라로이드카메라(Polaroid land camera)
저온배양기 (Low temperature incubator)	1	온도조절범위: 4 ~ 50°C 히터용량: Cord 218 W 온도조절정밀도: ±0.2°C
고압멸균기(Autoclaves)	1	사용압력: 2.4 PSI 사용온도: 105 ~ 135°C
교반가열판(Stirring hotplates)	1	회전수: 60~1100rpm, 사용온도조절범위: 25 ~ 550°C 열판재질: Glass Ceramic
건식멸균기(Dry heat sterilizer)	1	가열방식: 자연대류식 멸균온도: 40 ~ 200°C 소독형태: 자외선살균등
가온기 (Slide Warmer)	1	사용온도범위: 5 ~ 100°C 정밀도: 0.35°C
광학현미경(Microscope)	1	대안렌즈: ×10 대물: ×10, 20, 40, 100 중간배율렌즈: 1.6

장비명	수량 (대)	권장 규격
초저온냉동고 (Ultra-low temperature freezers)	1	냉매: CFC free 사용온도: -70°C 이하
냉동고 (Freezer)	2	형식: 서랍식 4단 사용온도범위: -20°C
냉장고 (Refrigerator)	2	냉각방식: 독립냉각시스템 형식: 좌우개폐형 냉동냉장 겸용 냉장사용온도: 4°C 냉동사용온도: -20°C
무균대 (Clean bench)	1	청정도: Class 100 풍속: 0.3 ~ 0.6 m/s 필터종류: HEPA필터 이상 풍량: 40 m <sup>3</sup> /min 살균등대장유무: 내장
증류수제조기 (Water distillation system)	1	4L/h 이상
조각분쇄기(Crushers or pulverisers)	1	재질: 스테인레스 회전수: 10,000 ~ 30,000 rpm 칼날 수: 1개
분석용전자저울(Analytical balance)	1	표시방식: 디지털, 소숫점 아래 2자리 측정범위: 100 ~ 2000 g
분석용전자저울 (Analytical balance)	1	표시방식: 디지털, 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측정범위: 0.1 ~ 200 g

#### 나. 권장기자재

장비명	수량 (대)	권장 규격
혈청원심분리기(Hematocrit centrifuge)	1	최대회전수: 12,000 rpm 최대용량: 0.04ml Capillary Tube x 24 Tubes
실체현미경(Stereo-microscopes)	1	총배율: 6.3 ~ 300 사진촬영장치 ZOOM기능: 1 ~ 8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Ultrapure water system)	1	표시방식: 디지털 무기이온제거율: 99%이상 증류수순도: 18.2 mΩ

장비명	수량 (대)	권장 규격
효소면역측정기(ELISA reader)	1	여기과장범위: 200~1,000 nm 인큐베이터온도범위: 4 ~ 45℃ 방출과장범위: <4.0 정확도: ±2.0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HPLC system)	1	UV검출한계: 안트라센 10pg이하 과장범위: 190 ~ 800 nm 과장측정정밀도: ±0.1 유량조절정밀도: 99.99
향온수조(Water bath)	1	수온조절방식: 디지털 PID 온도균일도: ± 0.24℃ 사용온도범위: 상온 ~ 100℃
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e: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s)	1	최대배율: 1,500,000× 분해능:투과형0.14 nm 격자상0.23 nm 에너지분포광도계내장유무: 유 주사전송전자현미경기능내장유무: 유 가속전압: 80 ~ 200 kV 진공도: 2.0×10 <sup>-5</sup> Pa 냉각방식: 수냉식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s)	1	총배율: 1,000×
조직표본염색장치(Tissue slide staining equipment)	1	슬라이드 Jar 재질: 스테인레스 슬라이드갯수: 11 염색능력: 슬라이드 30장 연색시간: 3 min
조직처리기 (Tissue processor)	1	최대자동운전시간: 100시간 이상 배쓰형태: BASKET 배쓰스테이션갯수: 12개 이상 파라핀스테이션갯수: 2개 이상
조직포매기 (Tissue embedding center)	1	사용온도범위: 45 ~ 70℃ 4℃ Cooling Plate 포함
회전식 마이크로톰 (Rotary Microtome)	1	두께조절범위: 0.25 ~ 70μm 작동방식: 전동식
세포배양실(BIO Hazard 시설)	1	기류방식: Horizontal Air-current 풍량: 15m <sup>3</sup> /min 풍속: 0.3 ~ 0.5 m/sec 청정도: Class 1000 Main filter: Hepa filter 0.12μ Dop, 99.97%

장비명	수량 (대)	권장 규격
		First Filter: Pre filter 50 ~ 70% U.V. Lam: 15W × 2ea
Realtime PCR	1	싸이클수: 99 가열속도: Max 2.5℃/sec 온도범위: 4.0 ~ 99.9℃ 온도정밀도: ± 0.3℃ Excitation wavelength: 400 ~ 700 nm
DNA서열분석기(DNA sequencer)	1	전체측정량: 164×970 bp/day 실행정밀도: 98.5% 레이저출력: 500, class III b
회전농축기(Evaporator)	2	회전수: 20-180 rpm 증발능력: Max. 20 ml/min (water) 진공도: 399.9MPa 이하
원심농축기(Centrifuge Evaporator)	1	회전속도: 100-2000rpm 온도제어: Thermistor시 ON-OFF 제어 히터: 140W 이상
삼중 사중극자형 질량분석기(LC/MS/MS)	1	검출한계: femtoqram 이하Standard mass range:30-1250 or more High resolution precursor ion selection of less than 0.4 Dalton Collision energy 0-±2000eV or more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s)	1	대안렌즈: ×10 대물: ×10, 20, 40, 100 중간배율렌즈: 1.6 형광필터: Blue, Green, Red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음
신청자	주소		
	기관명(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		
병성감정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소지학위(전공)		
	소지국가자격		
	기타		
<p>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및 취소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수산동물병성 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p> <p>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동물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원 및 사무분장표 사본 1부.</li> <li>2. 수산동물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각 1부.</li> <li>3.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및 병성감정실시요령 별표1의 시설 및 실험기자재내역 1부.</li> </ol>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제2008- 호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소재지 :  
대표자 :  
기관명 :  
최초지정년월일 :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및 취소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뒤쪽)

일자	구분	당초지정사항	변경지정사항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7일	없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관명					
지정번호					
당초지정사항					
변경요구사항					
변경사유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및 취소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신청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2.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원본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0-2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03월 30일  
국립수산과학원장

###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09. 03. 16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09-3호  
개정 2009. 05. 01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09-6호  
개정 2010. 03. 30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2010-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3항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6항에 따른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방류수산동물)**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면 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들돔, 참돔, 감성돔, 강담돔, 말쥐치, 쥐치, 황복, 자주복, 송어, 민어,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농어, 점농어, 능성어, 솜뱅이, 붉은솜뱅이, 동갈돔돔, 쥐노래미, 참조기, 대구, 전복, 오분자기, 참가리비, 비단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딱지, 꼬막, 양우럭, 병에돔, 자바리, 해삼, 꽃게, 대하, 보리새우
2. 내수면 품종: 잉어, 붕어, 뱀장어, 은어, 메기,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꺾지, 자라, 참게(동남참게 포함), 다슬기(꽃체다슬기, 주름다슬기 등 포함)

**제3조(검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 방류수산동물의 품종별 검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검사신청 등)** ① 방류수산동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검사신청기관”라 한다)은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제8호 서식의 “방류수산동물전염병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검사신청서”에 따라 검사신청기관의 관련 담당자는 검사용 시료 50개체(10cm이상의 경우 30개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실시)** 방류수산동물의 전염병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적인 검사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결과통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제2항 별지제9호 서식의 “방류수산동물전염병 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기관에게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2. 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사 결과의 조치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검사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수산동물의 양식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자료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검사 결과를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류수산동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종류

구분	품종명	검사항목	합격기준
해면 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강담돔, 동갈돔,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송어,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뚝지, 자바리, 뱀에돔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불검출
	전복, 오분자기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 마리누스만해당한다)	"
	비단가리비, 참가리비, 개조개, 개랑조개, 북방대합, 꼬막, 왕우럭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 마리누스만해당한다), 흰반점병	"
	대하, 보리새우, 꽃게	흰반점병	"
내수면 품종	해삼	전염성취장괴사증	"
	잉어, 붕어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전염성취장괴사증	"
	동자개, 메기, 대농갱이	잉어봄바이러스병	"
	쏘가리, 꺾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뱀장어	전염성취장괴사증,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은어	전염성취장괴사증	"
	참게	흰반점병	"
	자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다슬기	전염성취장괴사증	"	

##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12. 30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08-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항·제6항에 따라 수산동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수산동물병성감정”이라 함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동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병성감정 대상) 수산동물병성감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병성감정 실시기관) 수산동물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 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제5조(병성감정 등의 의뢰·신청) ① 병성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성감정의뢰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병성감정 정밀검사 대상 질병)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항목별 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하는 정밀검사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납부방법 및 절차) ① 의뢰인은 제6조의 수수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납부영수증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납부확인)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제7조에 따라 의뢰인이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영수증·결제계좌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병성감정 실시 등) ① 병성감정은 병성감정전용실험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수산동물양식시설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 후 남은 사체는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주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항목은 별표 2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가검물 관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후 남은 모든 가검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등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보관하고 있는 가검물의 제출이나 처리사항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통지서 등의 발급)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기관장은 병성감정의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과통지서를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병성감정 결과의 조치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인된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추가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아닌 기타 질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 수산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월별 병성감정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15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장이 월별 병성감정 실적을 취합하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국립수산과학원(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자료 관리시스템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병성감정 처리대장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

감정실시기관장은 담당자를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산동물병성 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수산동물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의뢰인이 납부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뢰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3. 병성감정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2008.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병성감정 정밀검사대상 질병(제6조 관련)

구분	정밀검사대상 질병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유행성궤양증후군,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2) 기생충성 질병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에 한한다),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레,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 한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카엔스에 한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에 한한다)
(3) 바이러스성 질병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궤장괴사증, 다투라증후군, 흰반점병,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복바이러스폐사증, 구상바쿨로바이러스증, 사면바쿨로바이러스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노랑머리병, 전염성연어빈혈증, 흰꼬리병, 전염성근괴사증

[별표 2]

병성감정 검사항목(제9조 관련)

구 분	부위별 소견	원인
유역 및 행동이상	무기력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 신경과사증, 전염성쇄장괴사증, 흰반점병, 전염성연어빈혈증,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폐사증
	신회유영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이상유영(flashing, 굵는 행위, 주수구 향합, 수면향합 등)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구상바쿨로바이러스증, 전염성조혈기괴사증,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유행성폐양후군,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타우라증후군, 노랑머리병
	식욕부진	노랑머리병, 바이러스성 신경과사증, 전염성쇄장괴사증, 흰반점병,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폐사증, 구상바쿨로바이러스증, 사면바쿨로바이러스증
	성장 저하	전복바이러스폐사증, 사면바쿨로바이러스증
외부소견	체색흑화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쇄장괴사증,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체색퇴색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흰꼬리병, 전염성피해및조혈기괴사증
	체색적변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
	복부팽만	잉어봄바이러스병
	복수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안구돌출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쇄장괴사증
	안구충혈 또는 출혈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안구 함몰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아가미 퇴색	노랑머리병,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아가미점액과다분비	자이로닥틸루스증, 전복바이러스폐사증
	아가미 증생 및 유착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아가미 충혈 또는 출혈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아가미 빈혈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아가미 괴사	전염성근괴사증

구 분	부위별 소견	원인
외부소견	피부궤양	자이로닥틸루스증,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유행성폐양후군
	피부출혈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쇄장괴사증,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납치담도바이러스증, 전염성조혈기괴사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자이로닥틸루스증
	체표점액과다분비	자이로닥틸루스증, 전복바이러스폐사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항문 농양, 염증, 출혈	잉어봄바이러스병, 전염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쇄장괴사증
	두홍갈 변색	노랑머리병, 흰반점병
	부속지 변색	타우라증후군, 가재전염병
	탈피증	타우라증후군
	지느러미 출혈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자이로닥틸루스증
	척추만곡	바이러스성 신경과사증
	내부 증상	복강 내 염증 또는 출혈
위장관 물질		잉어봄바이러스병, 전염성쇄장괴사증
신장 비대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신장 결절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신장 퇴색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간 결절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간 비대		전염성연어빈혈증, 전복바이러스폐사증
간 조직 괴사		잉어봄바이러스병
간 퇴색		노랑머리병
간 창백		유행성조혈기괴사증
간 울혈		전염성연어빈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비장 종대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제노할리오티스켈리포니엔시스감염증
비장 충혈		잉어봄바이러스병
비장 퇴색		유행성조혈기괴사증
부레-출혈		잉어봄바이러스병
근육 괴사		전염성근괴사증
중장의 백탁		구상바쿨로바이러스증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적( 년 월)

1. 기관명 :
2. 병성감정실적

병성감정항목	질병명	진단건수		발생상황			발생 시·군·구별 양식장수
		양식장수	검사량	양식량	발생량	폐사량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기생충성 질병							
바이러스성질 병							
혼합감염증							
기타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0-3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국립수산과학원장

#### 수산동물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정 2010. 5. 26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0-3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및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예찰의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찰”이란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사·탐문·임상검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 방역활동을 말한다.
2. “탐문”이란 수산동물의 일반적 사육현황 및 과거질병발생이력, 피해상황 등의 종합적 정보를 해당 수산동물양식자 및 관계자에게 청취조사 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임상검사”란 수산동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진”이란 수산동물전염병 검사대상 수산동물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혈청검사”란 수산동물전염병 검사대상 수산동물의 감염 및 면역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일정비율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확산의심지역”이란 수산동물전염병 발생·확산 이력이 있거나 관찰구역 내 예찰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임상검사·검진 등의 집중적인 예찰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일반조사지역”이란 확산의심지역에 비하여 예찰시설 분포 및 수산동물전염병 발생·확산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말한다.

### 제2장 수산동물전염병 예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예찰협의회 설치·운영)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 예찰협의회(이하 “예찰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계획 수립
2.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
3. 수산동물전염병의 조기검색 및 예방대책 수립
4.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성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양식관리과장, 병리연구과장
2. 국립수산과학원 동·서·남서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장
3.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의 수산동물방역 담당자
4.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장, 수산동물방역담당(과장 또는 주무)
5.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 예찰협의회의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물방역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예찰협의회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예찰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찰협의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수산동물방역 여건 또는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예찰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이 요령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예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예찰협의회 의결사항 및 예찰구역의 분할·업무논의 등 원활한 예찰업무수행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시·도별 예찰협의회(이하 “시·도 예찰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시·도 예찰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시·군·구 및 각 권역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의 수산동물방역담당자(과장 또는 주무)가 되며, 세부사항은 각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장이 정한다.

제7조(예찰협의회의 결과 조치)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예찰협의회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개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시·도 예찰협의회의 개최 결과를 개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예찰 실시 및 보고 요령

제8조(수산동물양식자의 예방활동) 수산동물양식시설의 소유자·관리자·운영자(이하 “수산동물양식자”이라 한다)와 그 종사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담당자(이하 “예찰요원”이라 한다)의 예찰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예찰 대상 지정) ① 예찰요원은 관할 구역 내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관상어 수조를 포함한 수산동물집합시설(이하 “예찰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을 할 수 있다.

② 예찰요원은 각 관할구역 예찰시설의 위치·분포·규모·질병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특성에 맞게 예찰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확산의심지역, 일반조사지역을 지정하여 해당지역 내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가능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반조사지역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상검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조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찰요원의 지정 및 해제)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동·서·남서해수산연구소 등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을 감안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수산동물전염병 예찰요원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예찰요원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
2. 해당 시·군·구 소속 수산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법 제48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시원
4. 법 제8조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사

5. 기르는어업육성법 제27조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

③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지정된 예찰요원이 인사이동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찰요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예찰요원의 임무) 예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예찰시설의 예찰 및 수산동물양식자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의 신고 또는 보고
3. 법 제13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4. 수산동물전염병 예찰과 관련한 현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시 협조
5. 수산동물전염병 이외의 전염성 수산동물질병 발생에 대한 임상검사 및 탐문조사
6. 해당 관할구역 내 예찰시설 현황 자료수집 및 관리
7.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12조(예찰의 실시) ① 수산동물방역기관 및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월 4회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예찰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동물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탐문, 임상검사 및 폐사한 수산동물의 처리실태 등의 예찰을 할 수 있다.

② 예찰요원은 예찰시설 출입 시,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방역을 위한 피복 등을 착용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산동물전염병 검사 실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내 확산의심지역 및 특정 예찰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동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산동물전염병 검사 대상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수산동물전염병 발생·확산 이력이 있는 의심지역
2. 반경 5km 이내에 양식장이 5개소 이상 밀집한 지역
3. 그 밖에 수산동물전염병 발생 시 확산 가능성이 높아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지역 또는 어가

③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산동물전염병 검사와 관련한 제반사항 및 검사일정을 시·도 예찰협의회를 통하여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예찰 및 수산동물전염병 검사 결과보고) ① 예찰요원은 탐문, 검진, 임상검사 등의 예찰결과를 통하여 제11조에 따른 수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관장과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관련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근 예찰시설에 수산동물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조치 및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 및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을 할 수 있다.

④ 예찰요원은 매회 실시한 예찰활동 및 수산동물전염병 검사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소속기관장 및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장은 시·군·구로부터 취합한 예찰활동 및 수산동물전염병 검사 결과를 분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예찰활동 통계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장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제15조(방역조치 검토)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받은 예찰결과를 기초로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한 방역지도 및 확산 방지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산동물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① 제15조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전염병 예찰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정보발령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하고 전국 양식장 현황도 표기를 통해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확산을 통제·관리할 수 있다.

1. 예보(노란색) :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상황 의심 등으로 정밀검사·역학조사 등의 초기 방역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2. 주의보(주황색) :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증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어 적극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때
3. 경보(적색) :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이 급증하거나 긴급방역조치를 하여야 할

때 또는 사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③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할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산동물양식자와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홍보할 수 있다.

**제5장 예찰 계획 수립**

제17조(계획수립) ①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의 수산동물전염병 예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14조제6항의 예찰활동 통계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기관 및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해의 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 실시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및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예찰결과를 기초로 월별·계절 및 지역별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유행시기 및 확산 등을 관할 시·군·구, 수산동물양식자 및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동물전염병 예찰 실적보고 (○○년 ○/○분기)**

1. 예찰지역 : ○○시·군·구

2. 예찰기간

○ 1회 : ~ (○월), 2회 : ~ (○월), 3회 : ~ (○월)

3. 예찰실적

지역	예찰 실적										예찰요원 동원인원 (월 연인원)
	계		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		
	개소	사육량	개소	사육량	개소	사육량	개소	사육량	개소	사육량	
○○시											
○○군											
계											

4. 수산동물전염병 감염의심 수산동물에 대한 조치사항

예찰 일자	대상시설 종류	수산동물주명 (시설명)	품종	누적폐사율/ 양식량	의심병명	임상조건	조치사항
월 일							현장조치사항 신고접수기관 조치사항
월 일							
월 일							
계	개소						

5. 종합의견

(별지 제2호 서식)

(질병명) 발생 ○○보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상황

발병지역 :

발생시기 :

발생량 :

주요 증상(구체적인 내용) :

예방 및 필요 조치사항 :

2. 금후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전망